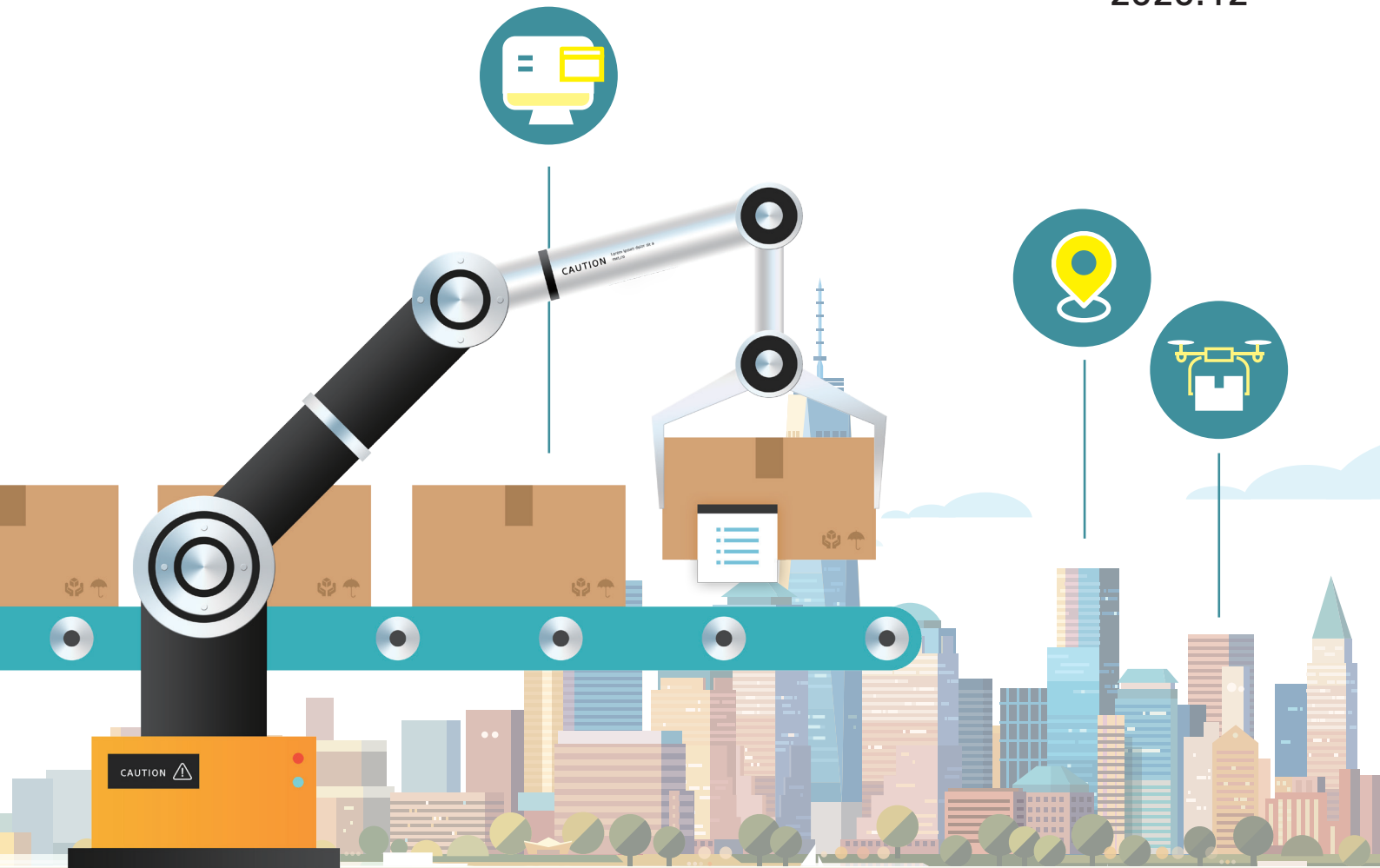


우수 물류신기술등 매뉴얼

2020.12



우수 물류신기술등 매뉴얼



2020. 12.



본 매뉴얼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 법 및 규정 등에 우선할 수 없으며, 매뉴얼 내용이 관련 법 및 규정 등의 최신 개정내용과 다른 경우 법 및 규정 등을 따라야 합니다.

Contents

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1
가. 제도 개요	3
1. 목 적	3
2. 관련 법규	3
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대상	3
4. 우수 물류신기술등 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5
5. 심사절차	5
6. 심사 기준	5
7. 보호기간	6
8. 처리기간	7
9. 홍보용 자료관리	7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8
1. 지정심사 처리절차	8
2. 신청자격	8
3. 제출서류	9
4. 신청서 접수 절차	11
5. 지정심사 비용	11
6. 선행물류기술 조사	12
7. 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12
8.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13
9. 기술심사위원회	14



10. 현장심사위원회	15
11. 품질검사	15
12.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위원회 결과 처리	15
13. 심사위원회 회의순서 및 신청인(이해관계인) 준비사항	16
14. 신기술 홍보용 자료 등록 관리	18
15. 지정 및 고시	18
16. 우수 물류신기술등 영문지정증서 초안 제출	18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 19

1.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	19
2. 신청기간	19
3. 제출서류	20
4. 현장심사위원회 (보호기간 연장심사는 기술심사 면제)	20

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으로 인한 혜택 21

1.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21
2. 구매 권고	21
3. 입찰가점 부여	22
4. 자금 지원	22
5. 그 밖의 지원 혜택	22

마.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22

1.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22
2. 청렴서약서 징구	22

Contents

바. 기피 및 회피	23
1. 신청인의 기피	23
II. 우수 물류신기술등 신청서 작성 요령	25
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27
1. 작성총칙	27
2. 표지작성	28
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	29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52
1. 작성총칙	52
III. 우수 물류신기술등 요약 및 홍보용	
자료 작성요령	65
가. 개요	67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 요약자료	67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용 자료	67
IV.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법령 및 기준	69



V.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서식 97

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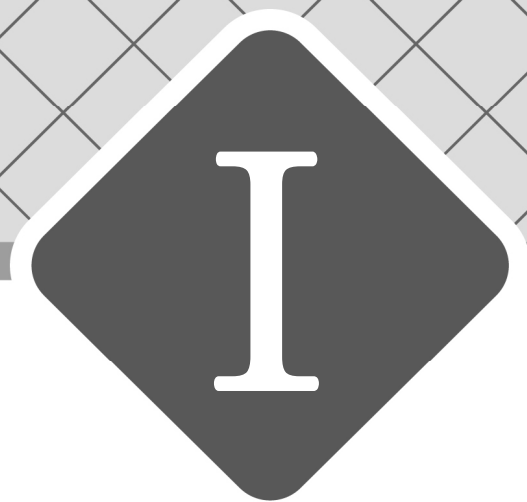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99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안)」
별지서식 99

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매뉴얼」 서식 100

VI.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 담당부서 안내 177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 담당부서 안내] 179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가. 제도 개요	3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8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	19
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으로 인한 혜택	21
마.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22
바. 기피 및 회피	23



가. 제도 개요

1 목적

-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2 관련 법규

-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2~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6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호)」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안)」(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대상 분야

분야	설 명
운송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보관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하역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포장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정보화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표준화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보안 / 안전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기술
기타	기타 물류 기술

4 우수 물류신기술등 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 법규 제·개정 - 우수 물류신기술등 업무 제도 개선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신청 공고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증서 교부 및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신청 접수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신청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신기술 심사 -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전문가 구축 및 운영 -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 알림

5 심사절차

가 지정심사 절차

-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기술심사 ⇒ 현장심사(품질검사) ⇒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 홍보자료 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나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심사(품질검사) ⇒ 지정(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홍보자료 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6 심사 기준

가 지정심사 기준

■ 기술심사 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개량한 기술(개발·개량정도, 차별성 및 혁신성)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성능·품질향상, 시공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 안전성
 -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기술공학적 안전성,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
-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유지관리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설계·시공비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 현장심사 기준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 보급·활용성
 - 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보급성, 활용성)

나 보호기간 연장심사 기준

■ 활용실적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활용건수 및 금액, 기술보급노력)

■ 품질검증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기술수준, 기술개량,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등)

7 보호기간

- 신기술 최초 지정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 시 연장심사를 통해 5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영 제46조의5, 규정 제12조제5항)

8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
 - 처리기간 산정시 제외기간(규정 제17조)
 - * 신청서 보완,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관계기관 의견조회, 심사 등에 따른 서류 보완, 심사결과의 처리 등에 따른 보완기간
 - *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이 공고기간(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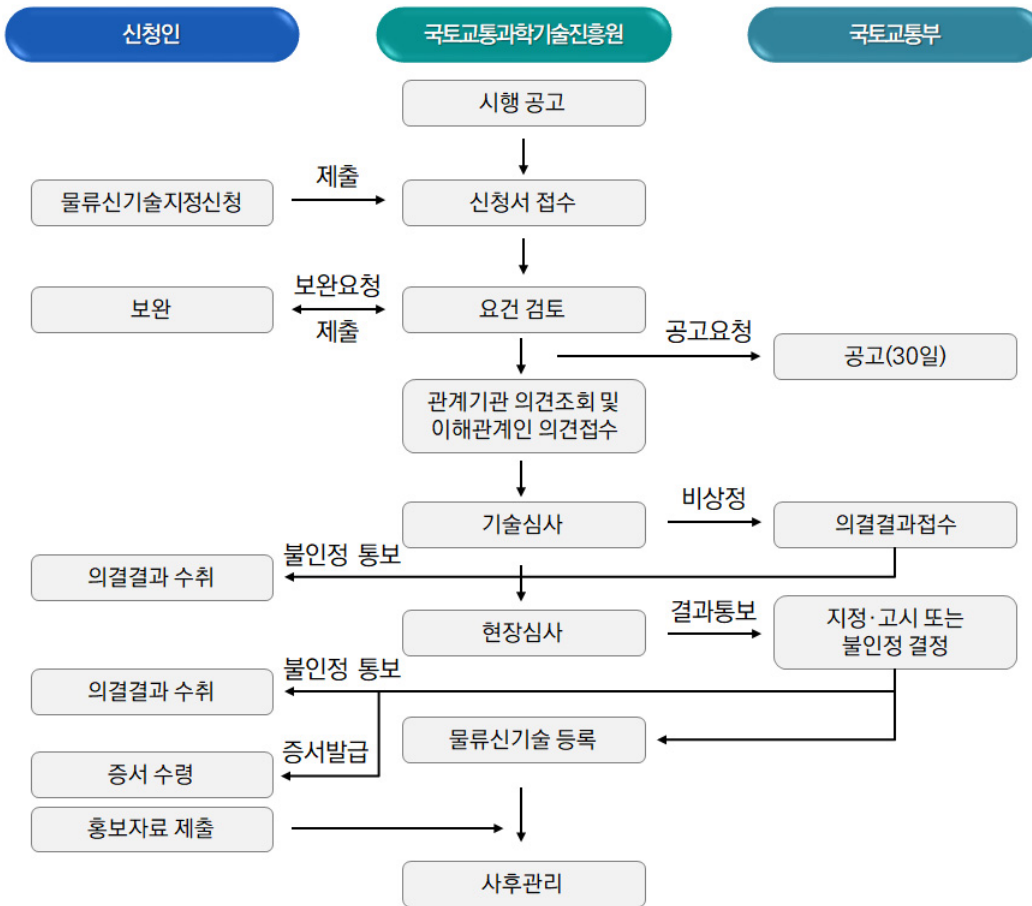
9 홍보용 자료관리

- 신청인은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보완사항 및 조정된 명칭, 범위, 내용을 반영하여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및 홍보자료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포함)를 진흥원에 제출
- 진흥원장은 홍보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여 관리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1 지정심사 처리절차



2 신청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자(그 승계인 포함)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
 - 신청인은 지식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체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이 지식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지식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 불가

-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지식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지식재산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매뉴얼 제8호서식)
-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와 공동 신청시, 기술개발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자
-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출서류

가 신청 공문 : 신청기관 대표자 명의로 작성(1부)

* 공동신청의 경우 대표기관에서 작성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전자문서 및 원본 1부)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를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접수요건 검토 후 최종 보완완료되면 진흥원 요청에 따라 35부 내외 제본하여 제출 필요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부록(전자문서 및 원본 1부)

- 지식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 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승계인은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자이어야 함
- 신청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R&D참여실적 증명서, 연구개발 협약서, 최종평가결과 '성공' 과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신청기술 관련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자체 시험결과 등을 첨부. "신기술 지정신청용"으로 용도 기재
 -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명시
-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현장 활용실적, 제품판매 실적 증빙자료 등
- 기타 증빙자료
 - 협약서, 세금계산서, 회의록, 공증자료, 녹색기술 인증서 등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등

라 원가계산서(전자문서(엑셀파일) 및 원본 1부)

- 신청인은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 신청서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용역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
 - ※ 원가계산서 뒷면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증서’, ‘등록증’ 또는 ‘자격요건 심사결과 통보서’ 제시(용역기관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원가계산서]는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원가계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원가계산서 표지 및 요약표는 매뉴얼 제1호 서식 참고
-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임
 - ※ 원가계산서 발급후 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물가가 크게 변동된 경우 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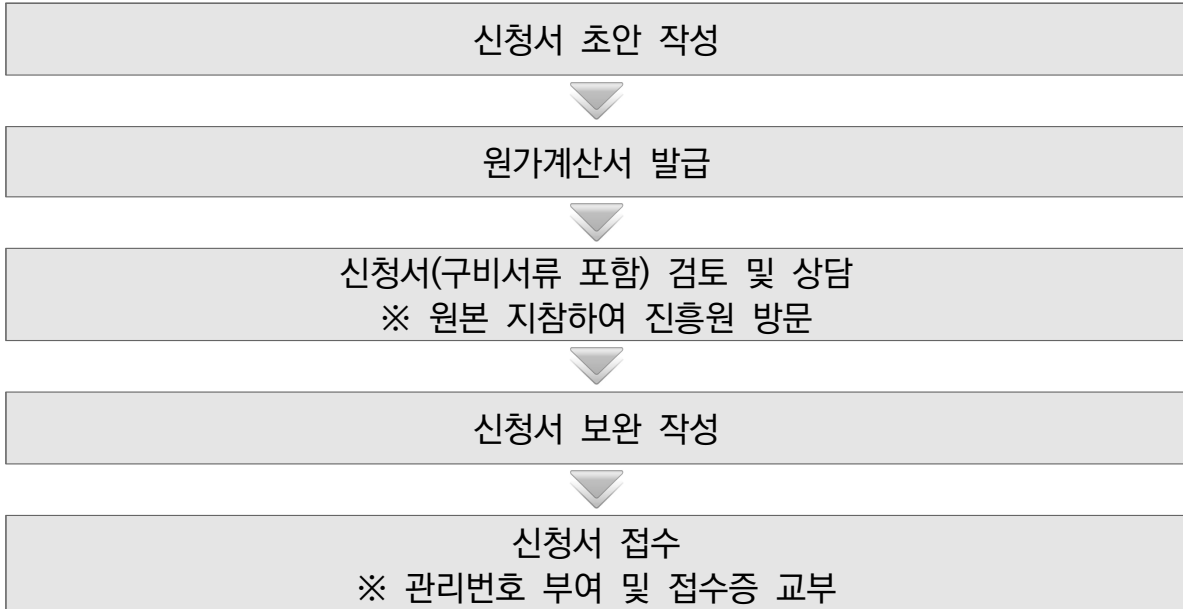
마 기타 서류

- 신청인이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원본
- 신청인이 개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기술분야 분류표, 활용실적 서약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동 규정 제3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
 - * 전자문서 형식
 - 신청서 : 한글 2007 버전 이상
 - 신청인 현황 : 한글 2007 버전 이상
 - 원가계산서 : EXCEL
 - 부록, 연구보고서 등 : PDF파일

바 추가 제출

- 기술심사를 통과한 경우 심사위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심사용 신청서, 부록 및 원가계산서, 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 등 각 15부씩 추가로 제출

4 신청서 접수 절차



5 지정심사 비용

가 심사비용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기술심사수수료 : 100만원(접수 후 납입)
- 현장심사수수료 : 100만원(기술심사 통과 후 납입)

* 현장심사 후 현장심사위원 수당, 여비 등 실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 반환 또는 추심

나 심사비용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한 후 지정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기술심사비용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주말, 휴일 제외)
- 현장심사비용은 기술심사 통과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를 입금

6 선행물류기술 조사

- 진흥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행물류기술을 조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
- 신청인은 조사된 선행물류기술과 신청기술의 차별성에 대한 답변자료를 1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
- 선행물류기술조사 결과서와 신청인의 답변서를 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

7 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가 공 고

-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에 공고
- 공고내용
 -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청기술의 명칭·분야·기술범위 및 주요내용

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 물류기술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해당 부서나 소속기관, 협회·학회·조합 등의 관계기관,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감리자, 신청기술 구매기관 및 선행물류기술 조사 전문기관 및 기타 신청기술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의견조회(규정 제8조)
-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음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와 신청인의 답변서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
- 진흥원장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조회 절차, 방법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음

8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법인 포함)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 신청기술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제출기한 : 신청기술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시 지정한 날 이내
- 제출서류
 - 이해관계 의견제출 공문
 - 이해관계 의견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 신청기술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자료(특허등록원부 및 명세서 등)
- 제출부수 : 17부(원본 1부 포함)
-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또는 의견 제출 제한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자신의 영업권 보호, 시장잠식 우려,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이해관계 의견처리
 - 이해관계 의견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는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와 함께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됨
 - ※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신기술 신청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장은 비밀유지 관련 각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를 받고 신청서를 교부
 - ※ 신청서 열람 요청시에는 열람요청 공문, 각서,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인감증명서 필요),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 이해관계인은 신청서 열람 후 기술심사시 진흥원으로 반납

- 신청인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상기 기한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및 제출한 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음

9 기술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기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중 추천으로 선정
 - 신청인이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특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에 제시한 경우 검토 후 배제
 - 기술심사위원회에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소속 직원인 간사가 참석
- 사전질의서 작성
 - 심사위원이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진흥원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위원회 개최·의결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현장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의결
 - 현장심사위원회 “상정” 기술의 경우 현장심사 시 주요 확인사항 결정
 - ※ 신청인은 위원회 지적사항 및 ‘현장심사시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 가능
- 심사사항
 -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경제성의 부합 여부
- 기타사항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음
 - 기술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작성한 기술심사 평가서를 현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반영

10 현장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중 추천으로 선정
 - 신청인과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특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에 제시한 경우 심사위원 선정시 반영
- 사전질의서 작성
 - 심사위원이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진흥원에 사전질의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위원회 개최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인정” 여부 의결
 - 신기술로 “인정”된 경우 심사위원이 합의하여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의결
- 심사사항
 -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의 부합 여부
- 기타사항은 기술심사위원회와 동일. 다만, 이해관계인은 참석하지 않음

11 품질검사

- 현장심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요구
- 진흥원장은 품질검사 결과 등 보완내용을 추가심사시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 추가심사는 기술심사의 절차와 내용에 따름

12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위원회 결과 처리

-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1회에 한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다만 이의신청은 심사내용에 한정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13 심사위원회 회의순서 및 신청인(이해관계인) 준비사항

가 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절 차	세부내용	비고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참석위원 소개	간사, 위원장
↓		
심사 절차 설명	신청 기술에 대한 진행 경과 및 심사절차 설명	간사
↓		
이해관계인 입장	이해관계인 자기소개 및 유의사항 설명(간사)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 생략
↓		
이해관계의견 설명(5분)	이해관계의견 설명	
↓		
이해관계인 질의답변(20분)	이해관계인과 심사위원간 질의답변	
↓		
이해관계인 퇴장		
↓		
신청인 입장	신청인 자기소개 및 유의사항 설명(간사)	신청인
↓		
신청기술 내용 설명 (약 15분)	신청기술 내용 설명	
↓		
신청인 질의답변 (약 60분)	신청인과 심사위원간 질의답변	심사위원
↓		
신청인 퇴장		신청인
↓		
평가서 작성(30분)	평가서 작성 방법 설명 및 평가서 작성	심사담당자, 심사위원
↓		
심사결과 의결	현장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의결	심사위원
↓		
폐 회		

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2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공문(이메일)으로 제출
-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자를 제한
 - 단독 또는 5개 미만의 법인(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5인 이내
 -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신청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5개 이상의 법인(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5인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신청기술의 개발에 관여한 외부인(연구용역, 특허발명 등)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정원 외 참석 가능. 다만, 발표는 불가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
 - ※ 신청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시 신청인의 의견 진술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발표자료를 15분 이내 분량으로 작성(MS PowerPoint 권장)하고, 17부를 출력하여 심사 당일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시공과정을 담은 동영상, 신청기술 샘플 및 모형 제시 가능)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
- 위원회 설명자료 중 필수 포함 사항
 -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의 기술개발 역할 및 내용
 - 보호받고자 하는 신기술의 범위
 - 심사요건 설명자료
-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요점만을 간략히 설명하고, 증빙자료 제시

다 이해관계인 준비사항(기술심사만 해당)

- 이해관계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3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공문(이메일)으로 제출
-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자를 제한
 - 이해관계인이 단독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3인 이내
 -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3개 이상의 법인(또는 개인)인 경우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예 : MS PowerPoint나 한글 등의 발표 자료, 동영상), 위원회 설명자료(17부) 및 샘플모형 등을 준비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
- 설명자료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경우와 같이 신청기술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이해관계 의견이 아닌 주장을 할 경우에 경고, 퇴장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

14 신기술 홍보용 자료 등록 관리

- 신청인은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보완사항 및 조정된 명칭, 범위, 내용을 반영하여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및 홍보자료(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포함)를 진흥원에 제출
- 진흥원장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관리

15 지정 및 고시

-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이후 지정증서 발급
- 지정증서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16 우수 물류신기술등 영문지정증서 초안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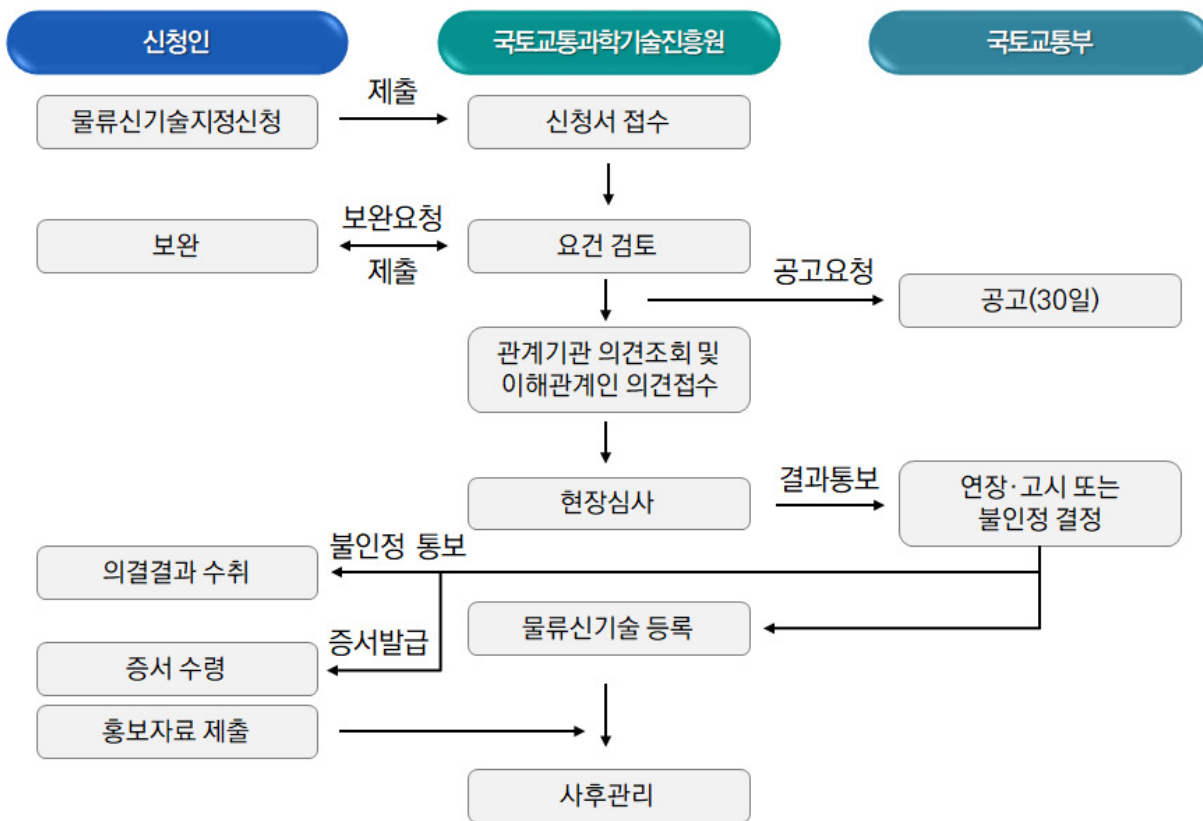
- 신기술보유자가 신기술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 규정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영 제46조의4제4항)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1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



2 신청기간

-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신청서(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제출

3 제출서류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 및 원본 1부)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부록(전자문서 및 원본 1부)
- 원가계산서 원본(전자문서 및 원본 1부)
- 신청서 파일(별책부록 및 원가계산서 등 포함)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 신청서 : 한글 2007 버전 이상
 - 신청인 현황 : 한글 2007 버전 이상
 - 원가계산서 : EXCEL
 - 부록, 연구보고서 등 : PDF파일
-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 ※ 기타 서류, 신청서 접수 절차, 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은 지정심사 처리절차와 동일

4 현장심사위원회 (보호기간 연장심사는 기술심사 면제)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선정
 -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중 추천으로 선정
 - 신청인이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특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에 제시한 경우 검토 후 배제
 - 현장심사위원회에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소속 직원인 간사가 참석함
- 사전질의서 작성
 - 심사위원이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진흥원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위원회 개최 정족수 및 의결 내용
 - 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

-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보호기간 연장 여부를 의결하고, 보호기간의 연장기간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정함

● 심사사항

- 활용실적 및 품질검증
-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을 심사하여 최초 지정받은 신기술의 내용(범위) 조정 가능
- 기타 진흥원장 또는 현장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기술 지정심사와 같은 처리절차의 설명은 생략함

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으로 인한 혜택



1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2 구매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를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2호)

3 입찰가점 부여

-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2항)

4 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원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보증,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1호)

5 그 밖의 지원 혜택

-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3호)

마.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1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지침 제16조제1항)

2 청렴서약서 징구

-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으로부터 서약서 징구(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바. 기피 및 회피

I

지정제도

1 신청인의 기피

- 진흥원장은 기피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신청인이 심사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지침 제7조제3항)
- 기피사유(지침 제7조제3항)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자
 -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로 한다)
 -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신청인측과 기술적인 문제 또는 입찰, 시공, 감리 등 업무 관련 분제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이 있었거나 분쟁중인 경우 등 신청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우수 물류신기술등 신청서

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27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52



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1 작성총칙

-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와 해당 기술 설명자료 및 구비서류를 말함
- 신청서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스는 「한글 2007」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 간격은 「160%」로 함
- 신청서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사용은 피하도록 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가급적 칼라로 인쇄
- 신청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를 작성하고, 목차는 가급적 상세하게 구성할 것
-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mm × 290mm)
- 제본 : 좌철, 무선제본
- 표지색상 : 연미색
- 표지 외의 색상은 모두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 * 서식, 목차 등 작성요령 준수

2 표지작성

<측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크기 15)

2010·0

(크기 10)

신청인

(크기 12)

<전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크기30)

(명칭:○○○○○○)

(크기18)

202○.○ (신청년도, 월, 크기15)

(신청인:○○○)

(크기 20, 하부여백 5cm)

* 겉표지색 : 연미색

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

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

- 신청기술 명칭은 신청기술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축하여 핵심용어로만 표기하되, 기존 기술의 용어나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기술의 용어는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명칭에 외국어나 특정 상표명, 개발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은 쓰지 않아야 함
- 명칭이 긴 경우나 홍보 등을 위한 경우, 함축한 약자로 명칭에 명기 가능

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

-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공식명칭을 전부 기재
- 주소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기재
- 법인(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생략
- 만약, 신청인이 법인과 개인,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란을 복수로 작성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신청서 원본에만 기재하고, 사본에는 기재하지 않음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범위

- 기술의 범위는 신청인이 개발, 소화·개량한 핵심 기술내용을 간단명료하고 기존의 기술내용과 차별성 있게 제시
- 기술내용과 관련이 없는 우수성, 효과성 등을 나타내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 기존 기술의 내용과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포괄적인 개념 등은 범위가 될 수 없음
- 이 범위는 당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서 보호받게 되는 사항임

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요약)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표기

- 전체적인 기술내용 중 신청인이 개발, 소화·개량한 “기술의 핵심” 내용을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자 이내로 요약 표기
- 신청기술이 적용 가능한 활용범위도 포함하여 기술하되 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이 어떤 기술인지를 전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술(미사여구, 기술의 효과 및 성능, 장점 등의 표기는 제외)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물류신기술등의 명칭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우)	
	(전화:)	
물류신기술등의 범위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요약)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물류신기술등의 명칭·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 1부	납부 수수료
	2. 물류신기술등의 내용(물류신기술의 요지 및 신규성·진보성·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적은 서류 1부	1만원 (수입인지 첨부)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 1부		
4. 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 1부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목 차

가.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1) 기술개발 개요	
가) 신청기술 개발 연혁	
나) 신청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내역	
다) 신청인의 연도별 상세 기술개발 참여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라) 기술개발 환경	
2) 신청기술의 범위	
3) 신청기술 내용	
가) 신청기술의 내용	
나) 신청기술의 검증기준, 결과 및 분석	
나. 심사기준 설명	
1) 신규성	
가) 개발 및 개량 정도	
나) 차별성 및 혁신성	
2) 진보성	
가) 성능·품질 향상	
나) 시공기간 단축	
다) 첨단기술성	
3) 안전성	
가) 기술공학적 안전성	
나)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	

4) 경제성

가) 설계·시공 공사비 절감

나) 유지관리비 절감

5) 현장적용성

가) 시공성

나) 안전성

다) 유지관리성

6) 보급·활용성

가) 보급성

나) 활용성

7) 기타 심사사항

가) 초기투자 비용 규모

나) 생산공정의 복잡 정도

다) 법·제도 정비 필요 여부

다. 설계도서

1) 시방서

2) 사양서

라. 유지관리지침서 / 운영 및 사용설명서

마. 기술 사용 요건

바. 현장심사

1) 신청기술의 활용실적 현황

가) 현장 활용실적

나) 제품 판매실적

2) 현장심사 가능현장

가) 목록

나) 심사 가능현장 현황자료

3) 현장심사 주요 확인사항

가) 공통

나) 심사기준별 확인사항

다) 기타

<별책 1> 신청서 부록

1)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2)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3)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4)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5) 현장 활용실적, 제품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

6) 기타 증빙자료

<별책 2> 원가계산서

목차별 작성요령

가.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1) 기술개발 개요

가) 신청기술 개발 연혁

개발과정 ¹⁾	일 자	주요 진행내용 ²⁾	개발자명 ³⁾
예) 개발동기	0000.00	•	
예) 시장조사	0000.00	•	
∴	∴	∴	∴

- 1) 개발과정 : 개발동기, 시장조사, 공동 기술개발 협약, 연구개발, 성능시험, 지식재산권 취득, 현장 적용 등과 같은 세부적인 개발과정을 연도별 일자순으로 작성
- 2) 주요 진행내용 : 개발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성능시험의 경우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시험내용 등을 작성
- 3) 개발자명 : 공동 신청인 경우 기술개발자(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신청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내역

부처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 책임자	총 연구기간 (해당연월)	개발자 역할	비고
(예시) 국토 물류부	미래철도 기술개발 사업	○ 사업단 :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AAA	0000.0~0000.0	공동과제 책임자	
		- 핵심과제명 : 차량개발	BBB	0000.0~0000.0		
		- 세부과제명 : 제어장치개발	CCC	0000.0~0000.0		
		- 공동과제명 : 제어로직개발	DDD	0000.0~0000.0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에 한함
- * 특히 국토교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될 경우 해당과제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은 신청인이 수행한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체 과제를 기재
- * '개발자 역할'에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위탁)로 수행 여부 또는 단순 참여기업 여부를 기재

다) 신청인의 연도별 상세 기술개발 참여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1) 신청인의 연도별 상세 기술개발 참여 내역

- * 신청인의 역할, 내용을 연도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그 입증자료는 별책에 수록

II 우수 물류신기술등 신청서 작성요령

* 입증자료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술개발협약서, 인건비·기술개발비 등 지급 영수증 또는 기술개발 단계별 검증 내용 및 검증기관의 검증서, 회계서류 등임

(2) 신청인 및 기술개발 참여자 이력

※ 신청인(단독 또는 공동)을 포함한 기술개발 참여자(용역기관 포함)의 이력과 각각의 역할 및 내용을 상세히 작성

구분 ¹⁾	순번	소속기관	성명	소속기관 이력 ²⁾	기술개발참여내역 ³⁾
(예시) 신청인	1	00엔지니어링	홍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3~2009.5 : 00기술 • 2009.6~현재 : 00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구조해석 (별책 00쪽 참조) • 기간 : 0000.0~0000.0 • 소속 : 구조부 • 직급 : 과장

1) 구분 : 신청인(개인 또는 법인), 연구용역기관, 시험 또는 인증기관 등

2) 소속기관 이력 : 기술개발 참여자가 최근 3년 이내 소속기관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속기관명을 모두 기재(연구용역기관의 경우 책임자만 해당)

3) 기술개발 참여내역 : 신청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역할, 기간, 소속 및 직급 등을 상세히 기재

*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역할을 증빙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라) 기술개발 환경

* 신청기술의 개발동기를 기술하는 것으로 기존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의 기술동향을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서 신청기술의 타당성에 대하여 신청기술의 보급성을 감안한 시장성 현황과 예측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신청기술의 범위

신청 범위	<규칙 제15호의2서식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범위와 동일하게 기재>
상세 설명	<위 신청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3) 신청기술 내용

가) 신청기술의 내용

- * 전체적인 신청기술의 내용(공법, 제작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기술 내용을 세분하여 기술하고, 개념도·현장사진·도면·도표 등을 이용하여 설명

나) 신청기술의 검증기준, 결과 및 분석

검증항목	검증기준	검증결과	분석 내용

- * 신청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준(시험기준 등)을 근거, 타당성 및 절차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수행한 시험결과 등 검증결과 및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
- * 국가공인기준(KS기준, 인증기준 등)을 나열하여 이 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를 표기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분석 검토내용을 기술(증빙자료는 별책에 수록)

나. 심사기준 설명

- * 아래 심사기준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고, 근거자료는 별책에 있는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고 검증결과가 있으면 함께 기술

1) 신규성

- * 신규성은 외국기술을 포함하여 유사·선행기술의 유무 및 기존 기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통한 신규성을 설명
- * 개량된 기술이란, 개량의 정도가 기술적 독창성이나 기술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술이어야 함

가) 개발 및 개량 정도

(1)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 그 내용

- ※ 출원하였거나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내역을 아래 서식에 맞춰 작성

구분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예) 특허출원				

- * 기술개발 내용을 알기 쉽게 핵심사항 위주로 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경우에 그 내용

* 개량의 대상이 된 기존 기술을 제시하고, 기존 기술의 어떤 부분을 얼마나 개량했는지, 기존 기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기술

○ 소화·개량의 대상이 된 기존 기술

- 기존 기술 명칭 :
- 기존 기술 내용 :
- 지적재산권 :
 - 등록권자(출원자 포함) :
 - 등록일자 :
- 기타 사항 :

○ 소화·개량한 신청기술

- 신청기술 명칭 :
- 개량한 내용 :
 - * 구체적으로 기술
- 개량의 대상이 된 기술과의 차이점 :
 - * 기존기술과의 차이점을 모두 기술
- 기대효과 :

나) 차별성 및 혁신성

(1)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 필요시 별지에 추가로 상세내용이나 자료를 첨부
- * 신청기술과 검색된 기존 선행기술에 대해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신규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동종의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우수물류신기술 등 포함)을 모두 제시하고 신청기술과의 차별성을 비교·분석하여 제시(기존 유사 우수물류신기술 등의 경우 지정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할 것)

구분	기존 기술명	개발자 (개발년도)	기술내용	공법의 원리, 특징 및 기능	신청기술과의 차별성
1					
2					

- ※ 신청서 접수 후 진흥원장이 선행물류기술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은 조사된 기술과의 차별성에 대해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2) 기술적인 혁신성

- *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인 혁신성의 정도를 설명
- * 자재, 인력 및 기술력 등이 기존기술의 여건변화에 영향이 적고 외국기술 및 타 신기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혁신성이 우수한 정도를 설명

2) 진보성

- * 신청기술을 활용하여 적용한 경우 기존기술과 유사기술과의 비교분석 자료 첨부

가) 성능·품질 향상

- * 성능·품질의 목표 및 기준(KS기준, 인증기준 등) 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성능평가서 등에 근거하여 품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 제시
- * 신청기술 관련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자체 시험결과 등을 첨부

관련 법규 및 기준		품질기준 세부내용	비고
예) 관리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예) KS 기준			

나) 시공기간 단축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시공기간 단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가급적 표로 제시)

다) 첨단기술성

-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에너지절감·친환경 관련 등 핵심기술에 대한 내용 설명
- ※ 국가R&D 성공과제의 성과물 또는 녹색인증 기술은 해당항목 최대점수 부여

3) 안전성

가) 기술공학적 안전성

* 신청기술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공학적 원리 또는 이론적 배경을 기술

나)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근거하여 안전성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되, 물류기술의 이용자, 물류사업 종사자 및 주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지의 여부와 영향 정도에 대해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술

4) 경제성

- * 원가계산서 등에 의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동일조건에서 기존의 동종기술과 비교하여 비용 절감내역, 절감액 등을 기술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 공정표, 시공·제작 순서 등을 도식화하여 공사·제작 기간을 제시하고, 기존기술 대비 공사·제작의 단축기간, 효과 및 용이성 등을 기술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 비교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기재(조달청 나라장터, 물가정보 00년 00월 기준 등)

번호	규격	신청기술	유사제품 ①	유사제품 ②	결과
1					
2					
합계					

구분		신청기술	유사공법 ①	유사공법 ②	산출근거
		T=30mm	T=30mm	T=30mm	
비목		단면복구, 벽체	단면복구, 벽체	단면복구, 벽체	
재료비	직접재료비				직접산출 직접재료비×2.00%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직접산출 직접노무비×11.00%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기계경비				직접산출 노무비×3.70% 직접노무비×1.590% 직접노무비×2.480% 노무비×0.690% 건강보험료×6.550% (재료비+직접노무비)×2.480% (재료비+노무비)×5.60%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소 계				
순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6%)					순원가×6.00%
이윤(15%)					(노무+경비+일반관리비)×15.00%
총원가					
신청기술대비(%)					

주 1) 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부록 기타 일위대가표 참조)

2) 제비율 : 2011년 조달청 적용기준임.

3) 유사공법 ① : 우수 물류신기술등 00호 참조

4) 유사공법 ② : 우수 물류신기술등 00호 참조

가) 설계·시공 공사비 절감

* 기존기술과 신청기술의 시공절차를 도식화하여 해당공종의 전체 공사비와 신청기술의 고유영역에 대한 공사비를 작성하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공종은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산출

나) 유지관리비 절감

*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LCC 전반에 걸쳐 비용 절감효과 등

* 환경개선, 민원 처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

5) 현장적용성

가) 시공성

- * 기존기술에 비해 공정이 간소화되고, 시공이 간편한지 여부를 절차별로 설명
- * 선행 및 후행 공정과의 간섭 여부 고려

나) 안전성

- *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유해요소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동종분야 기존 유사기술에 비해 안전성의 개선 내용에 대해 설명

다) 유지관리성

-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시 인력, 장비 등 투입 빈도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

6) 보급·활용성

가) 보급성

- * 기술적 특성, 공익성 및 시장 형성 가능성과 연계하여 보급 필요성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성

- 공익성

- * 개발한 기술 적용시 물류사고 예방 및 감소, 수입대체 효과, 이용 편의성 증대 등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 기술

- 시장 형성 가능성

- * 국내의 물류산업에서의 활용 전망, 국내외 수급(需給)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 시장특성 및 구조, 유사기술과의 경쟁상태 및 유사기술의 출현가능성, 해외시장 수출 전망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해당 증빙자료를 통하여 시장 형성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기술

7) 기타 심사사항

가) 초기투자 비용 규모

- * 기술개발에 투입된 기간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개발기술의 보급·활용에 필요한 향후 투자비용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나) 법·제도 정비 필요 여부

- * 신청기술과 관련되는 법규 및 제도가 있는 경우 기재
- * 신청기술의 활용과 관련하여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작성

다. 설계도서

- * 주요한 설계도서를 첨부하고 그 외의 설계도서는 부록에 첨부. 설계도서의 양이 많은 경우 현장심사 시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할 것

1) 시방서

- *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시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시방서 내용 기술
- *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0호, 2009. 8. 24)’에 의하면 품질시험기준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기술에 대한 품질시험기준을 마련하여 본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품질시험기준을 포함하여 기술하기 바람
- * “시방서”란, 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로서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총칙사항(一般總則事項)이 표시됨

2) 사양서

- *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의 제작·생산 등의 경우에 한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함에 있어 유의사항 등을 기술
- * 사양서는 가급적 상세하게 알기 쉽게 기술하고, 국제 공인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술

라. 유지관리지침서 / 운영 및 사용설명서

- *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 신청기술에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유지관리 내용, 신청기술의 조작방법 및 사용·운영 방법과 유의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참조)으로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점검방법, 관리방법, 유지보수공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마. 기술 사용 요건

- *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내지 자격을 제시(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조건 등)
- * 부적절한 사용자에 의한 신기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의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

바. 현장심사

* 현장심사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기준에 대한 적합여부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대로 현장에 적용, 제작·생산·시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구체적인 현장 적용 내용(발주내용 포함)과 품질 성능 효과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기술

1) 신청기술 활용실적 현황

가) 현장 활용실적

(1) 목록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비고
1							예)발주처확인
2							감리사확인
3							
4							
5							
6							
7							
8							
9							
10							시험시공

- * 공공기관의 공사에 참여한 경우 발주처가 확인한 실적증명만 인정
- * 민간공사 또는 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
- * 비고란에는 신청기술에 대한 신청인의 직접 또는 위탁시공, 시험시공여부를 기재하고, 시험시공인 경우에는 비용 부담 주체 및 방식 명기
- * 신청인은 활용실적 서약서 별도 제출

(2) 활용실적별 상세현황

공사 개요	공사명					
	공사 기간	'00.00.00 ~ '00.00.00 (00개월)	총 공사비	00,000,000천원	신청 기술 공사비	00,000,000천원
	신청기술 적용내용	* 해당 공사에 적용된 신청기술의 범위, 내용 등을 기술				
유지관 리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TEL)				
발주자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TEL)				
원도 급자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TEL)				
감리자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TEL)				
신청 기술 시공 업체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TEL)				

* 전체 현장 활용실적에 대하여 공사건별로 위 서식을 복사하여 작성하되 발주자 및 감리자가 다를 경우에 같은 서식으로 추가 기재

II
신청서
장기이행

나) 제품 판매실적

연번	제품명	구매자명	판매 수량	제품 단가 / 신청기술의 단가	총 판매금액 / 신청기술의 총 판매금액	판매일	비고
1							
2							

- * 전체 활용실적에 대하여 제품건별로 위 서식을 복사하여 작성
- * 공공기관이 구매자인 경우 공공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만 인정
- * 구매자가 공공기관 외인 경우 계약서, 납입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 구매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
- * 신청인은 활용실적 서약서 별도 제출

2) 현장심사 가능 현장

가) 목록

- *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2달 정도의 기간 안에 현장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10개소 이내로 작성하고, 공사의 경우 시공 중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으로 분류하고, 제품의 경우 생산현장과 적용현장으로 분류
- * 심사현장 목록이 변경된 경우 현장심사 전까지 진흥원 담당자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1) 공사인 경우

우선 순위	공 사 명 (현장위치)	발주자/ 시공사	신청기술만의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천원)	시공장소	비고
1	예) XX 공사 (경기도 □□시 ××면)	XX시청/ (주)XX	2008.08.03~2009.08.03 45,000,000천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시공중
2	예) XX 공사 (경기도 □□시 ××면)	XX시청/ (주)XX	2008.08.03~2009.08.03 45,000,000천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준공
3					

(2) 제품인 경우

우선 순위	현 장 명 (현장위치)	구매자	총 판매금액과 신청기술만의 판매금액(천원)	비고
1	예) (주)○○○ △△공장 (경기도 □□시 ××면)			생산현장
2				적용현장
3				

4) 현장심사 주요 확인사항

* 각 현장별로 심사위원이 신청기술을 현장심사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개조식으로 정리하고, 점검항목이 많을 경우 란 추가 가능

가) 공통

구분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심사의견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생산 상태, 활성화 여부	예) 적용자재 확인	신청기술 재료 납품증명서 입고확인서 등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	:	:
설계도, 운영 및 사용설명서,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적정성				
	:	:	:	:
:	:	:	:	:

II
신청서
장기이행

나) 심사기준별 확인사항

심사기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심사의견
현장적용성	시공성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	:	:
	안전성				
		:	:	:	:
보급·활용성	유지관리성				
		:	:	:	:
	보급성				
		:	:	:	:
	활용성				
		:	:	:	:

다) 기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심사의견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	:	:

<별책 1 : 부록>

가) 부록

- * 부록에 별도 페이지로 기재

1)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 등록(출원)된 지식(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등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을 명세서와 함께 첨부
- * 신청인이 승계인인 경우, 승계인이 지식(산업)재산권자이어야 함

2)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 신청서 본문 내용에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내역에 대한 근거자료(예시 : R&D 참여실적 증명서, 보고서, 연구개발 협약서,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3)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 신청서 본문 내용에 제시된 품질시험결과 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시험성적서, 시험시공 검증자료, 현장 적용 검증자료 등)를 첨부
- * 품질검사는 KOLAS(한국인정기구, kolas.ats.go.kr)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가급적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에서 해야 하며, 해당 품질검사 공인시험기관의 인정서를 첨부
- * 신청기술 관련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자체 시험결과 등을 첨부
- * “신기술 지정신청용”으로 용도 기재

4)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 본 신청서의 신청기술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첨부

5) 현장 활용실적, 제품판매 실적 증빙자료 등

- * 실적증빙자료(계약서, 공사내역서, 기성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발주처와 감리자의 확인서, 각종 인증서(타 부처 신기술 및 ISO인증 등)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시

6) 기타 증빙자료

- *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녹색인증서 등)를 수록
- * 공동신청인 경우 기술개발 증빙자료(협약서, 회의록, 계산서 등) 수록

<별책 2 : 원가계산서>

-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1 작성총칙

- 신청서(책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말함
 - 신청서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한글 2007』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 신청서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 신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는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페이지를 작성하고 목차를 구성할 것
 -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mm × 297mm)
 - 제본 : 좌철, 무선제본
 -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 ※ 원본 서류는 신청서 부록에 포함하여 제본하거나, 별도 제출 가능

[별지 제15호의5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 호)	
신청인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우)	
	(전화:)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범위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요약)		

II
신청서
장기이행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범위 및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납부 수수료
	2. 「건설기술관리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실적증명서 1부 3.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적은 서류 1부 4.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1만원 (수입인지 첨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사본 삽입

목 차

- 가.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 1) 기술개발 배경
 - 가)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 나) 범위 변경
 - 2) 신기술의 내용
 - 3) 신기술의 범위
 - 가)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 나) 범위 변경
- 나.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 1) 활용실적
 - 가) 활용 건수 및 금액
 - 나) 활용실적 분석
 - 다) 기술보급 노력
 - 2) 품질검증
 - 가) 기술수준
 - 나) 기술개량
 - 다) 경제성
 - 라) 시장성
 - 마) 안전성
 - 바) 권고사항 이행여부
- 다. 현장심사 계획

II
신청서
장기인증

라. 지식(산업)재산권 내역

- 1) 지정신청시 지식(산업)재산권 내역
- 2) 보호기간 동안 변경된 내역(추가, 소멸 등)

마. 설계도서와 유지관리지침서/운영 및 사용설명서

- 1) 시방서
- 2) 사양서
- 3) 유지관리지침서/운영 및 사용설명서

바. 기술 사용 자격

<별책 1 : 부록>

- 1)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2)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3)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4)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5) 신기술 활용실적, 제품판매 실적 증빙자료 등
- 6) 기타 증빙자료

<별책 2 : 원가계산서>

가.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1) 기술개발 배경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2) 신기술의 내용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 내용에 해당하는 설치 또는 시공절차 등 포함

3) 신기술의 범위

가) 범위에 대한 설명

〈지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하여야 함〉

나) 범위 변경

- * 신기술 지정 이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량한 내용을 범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작성
- * 신규성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음. 다만 명칭은 변경하지 않음

나. 보호기간 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1) 활용실적

가) 활용 건수 및 금액

- * 제출한 활용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 전체 공사중 일부만 신기술로 활용한 경우 “신기술범위”에 해당하는 활용실적만 해당됨
- * 2년 이상 계속 진행된 활용실적의 경우 1건으로 산정

- (현장 활용실적)

(단위 : 천원 , VAT포함)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 주 처	실적금액	지역	비고
▪ 2013년						
1						
2						
▪ 2012년						
3						
	합 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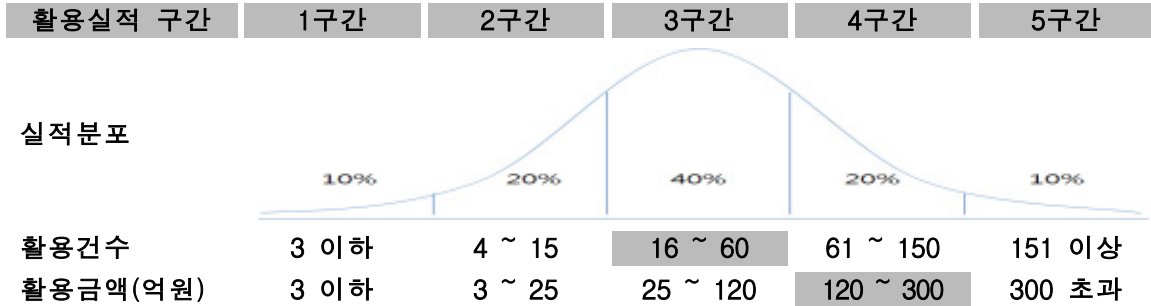
- (제품 판매실적)

(단위 : 천원 , VAT포함)

순번	공 사 명	판 매 기 간	구입기관	실적금액	지역	비고
▪ 2013년						
1						
2						
▪ 2012년						
3						
	합 계				천원	

나) 활용실적 분석

*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활용실적 구간을 표시하고, 신기술 지정 전후의 활용실적 비교, 동종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실적에 대한 설명



* 활용건수와 금액의 구간이 상이한 경우 높은 구간을 적용

다) 기술보급 노력

- (해외 활용실적)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만\$ 미만	500~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배 점	1	2	3

* 활용건수와 금액 중 배점이 큰 값을 적용

- (기술보급 노력)

연번	기관명	일시	장소	전시 내용	비고
1					※ 주관, 주최, 후원 여부
2					
3					

* 정부·지자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서만 기술

2) 품질검증

가) 기술수준

(1)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분석

- * 국내·외 동종의 유사 기술(신기술 포함)의 수준과 신기술의 기술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비교·분석
- * 신기술지정 이후 해당 기술과 관련된 법규나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2) 향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및 발전 방향 분석

- * 국내·외 수급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라 보완·개선사항을 도출·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하여 제시

나) 기술개량

- * 신기술 지정 후 현장적용을 통해 기술이 개량된 경우 개량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개량 내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
- * 기술개량을 통한 성능 및 효과(시공성, 안전성, 사용상 효율성 등)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
- * 필요시 기술의 범위를 변경요청 할 수 있음

다) 경제성

(1) 신기술 지정 이후 경제성에 대한 사항 기술

- * 신기술 지정 이후 신규 개발된 기술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성 재검토
- * 원가계산서에 근거하여 경제성을 정량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분석·제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2) 향후 현장 활용을 통한 공기단축, 비용절감 가능성 등 분석

- * 향후 신기술의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기대되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효과 등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제시
- * 제품의 경우 구입비, 처리시간 등에 대한 동종 유사 제품과의 비교시 우수성 여부

라) 시장성

(1) 신기술 관련 시장 동향

- * 신기술 적용결과와 동종의 유사기술(신기술 포함)을 비교하여 시장규모, 수요, 기술경쟁 상황 등의 동향 기술

(2) 신기술 관련 경쟁 우위 여부, 시장 확대 가능성

- * 향후 타 기술 대비 경쟁우위 지속 여부, 시장 확대가능성 등을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제시

마) 안전성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바) 권고사항 이행여부

- * 신기술 지정시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이행 내용을 설명(권고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다. 현장심사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라. 지식(산업)재산권 내역

1) 지정신청시 지식(산업)재산권 내역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특허출원 등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2) 보호기간 동안 변경된 내역(추가, 소멸 등)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신청서에 제시했던 지식(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과 내역을 작성하고 변동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로 제시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특허출원 등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마. 설계도서와 유지관리지침서/운영 및 사용설명서

-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제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 * 신기술 보호기간 동안 기술이 개량되어 일부 내용을 변경·추가·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원안과 비교표 작성
- * 최초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장의 승인 필요

1) 시방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2) 사양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3) 유지관리지침서/운영 및 사용설명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바. 기술 사용 자격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별책 1 : 부록>

* 부록에 별도 페이지로 기재

1)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2)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3)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 신기술 지정 이후에 실시한 시험 또는 성능평가서만 해당

4)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5) 신기술 활용실적, 제품판매 실적 증빙자료 등

* 활용실적목록 및 증빙자료(계약서, 공사내역서, 기성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홍보실적 : 정부·지자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참여사실확인서, 관련 공문, 사진, 기사 등

6)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수록

<별책 2 : 원가계산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우수 물류신기술등 요약 및 홍보용 자료 작성요령

가. 개요	67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 요약자료	67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용 자료	67

가. 개요



- 요약자료 및 홍보용 전자문서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국토교통부나 진흥원에서 홍보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 요약자료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 활용현황 및 전망,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매뉴얼 제4호서식]에 맞춰 A4규격용지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기본 설계도(상세도면 및 개념도 등)를 첨부하고, 우수 물류신기술등 시공·제작 과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 시공과정의 동영상 자료(CD) 제출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용 자료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 시부터 지정 시까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질의·답변 사항 등을 수정·보완하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상의 명칭, 기술범위, 기술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여야 함.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상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로 교체하고,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상의 있는 명칭, 범위 및 내용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상의 명칭, 범위 및 내용으로 하며,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여 전자문서(CD) 형태로 제출
-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용 자료는 [매뉴얼 제5호서식]에 맞추고, 표지색상은 하늘색으로 작성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법령 및 기준

가. 물류정책기본법(관련조항 발취)	71
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관련조항 발취)	73
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관련조항 발취)	76
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79
마.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안)	89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법령 및 규정]

가. 물류정책기본법(관련조항 발췌)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5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클라우드컴퓨팅·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 2018. 8. 14.>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

1. 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2.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활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8. 6. 12.>
-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58조(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제목개정 2018. 6. 12.]

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관련조항 발췌)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46조의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이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일 것
2.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일 것
3.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일 것

[본조신설 2018. 12. 11.]

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물류신기술등의 명칭·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
2. 물류신기술등의 내용(물류신기술등의 요지 및 물류신기술등의 신규성·진보성·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
4. 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6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제46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고 그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년의 범위에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6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 제46조의4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호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심사 및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금 또는 보증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지원 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

3.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4. 해외 기술정보 등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관련조항 발췌)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2020. 9. 9., 타법개정]

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9. 1. 11.]

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9. 1. 11.]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 11.]

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9. 1. 11.]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물류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물류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 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2019. 1. 11.]

[별표 3]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제14조의3 관련)

구분	금액
신청수수료	건당 1만원
1차 심사비용	건당 100만원
2차 심사비용	건당 100만원

비고

1.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납부합니다.
2.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 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납부합니다.
3.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심사비용(현장심사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현장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합니다.
5. 현장심사에 따른 여비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호, 2020. 1. 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신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물류체계에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지정된 새로운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을 말한다.
2. “신청기술등”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한 물류신기술등 또는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물류신기술등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등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4. “기술심사”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또는 규칙 제14조의5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관계기관의 의견 및 영 제46조의3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을 하거나 영 제46조의5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심사 상정 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장심사”란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심사로, 신청기술등이 적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방문과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선행물류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의 조사 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 또는 신기술로 등록되었거나,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제2장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심사 등

제3조(신청의 접수) ① 영 제46조의3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이하 “지정신청”이라 한다) 하거나, 영 제46조의5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이하 “연장신청”이라 한다)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6조의3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지정신청기술등”이라 한다)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신청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지정신청기술등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물류신기술등을 포함한다)과의 비교 분석 자료
3. 현장심사가 가능한 지정신청기술등을 활용한 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등
4.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심사평가서 또는 제3호서식의 현장심사평가서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
5. 신청인(공동개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도별 기술개발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6. 신청인의 지정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원부 등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7.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

③ 영 제46조의5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한 물류기술등(이하 “연장신청기술등”이라 한다)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연장신청기술등과 국내외 동종 기술등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

3. 현장실사가 가능한 연장신청기술등의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4.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
5. 연장신청기술등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6.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증빙자료

제4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진흥원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누락한 경우
2. 물류신기술등의 권리관계를 승계한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②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이 거부된 신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다시 제출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5조(신청인의 특별관리)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동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2.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허위이거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부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공고)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등 또는 연장신청기술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인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분야·주요내용 및 범위
4. 연장신청인 경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번호·명칭·분야·주요내용·범위 및 보호기간

제7조(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제6조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②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및 제출한 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조회) ①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4제2항 또는 영 제46조의5 제2항에 따라 신청기술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2. 신청기술등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신청기술등 구매기관
4.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물류기술 조사 기관
5. 그 밖에 신청기술등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진흥원장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조회 절차, 방법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① 지정신청 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심사

가. 신규성: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개량한 기술

나.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편리성 및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다. 안전성: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라. 경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2. 현장심사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나. 보급·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② 연장신청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실적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2. 품질검증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제10조(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술등에 대한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기술심사위원회(1차)와 현장심사위원회(2차) 등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술심사) ① 기술심사는 신청기술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0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기술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기술개발에 참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심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제11조에 따른 기술심사 후 제10조에 따른 현장심사 위원회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평가서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신청인은 현장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 기술설명 등 현장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현장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품질검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보완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기술등에 대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의결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기술등에 대하여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영 제46조의3에 따른 물류신기술의 지정대상의 세부 분류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해상·해운·항만 관련 분야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신청기술등에 대한 연장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종합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본다.
- ⑥ 그 밖의 현장심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심사결과와 처리)** ①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신청기술등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장은 제12조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신청의 경우에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와 보호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을 "불인정"으로 결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심사 내용에 한정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장 사후관리

- 제14조(영문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4조의4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관리)** ① 진흥원장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유지·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요약자료를 포함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자문서(요약자료를 포함한다)를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 제16조(보안대책 수립 및 비공개)**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등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유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위해 제출 또는 작성된 서류 중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7조(기간의 산정)** 영 제46조의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
1. 제4조·제7조·제8조·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
2.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이 제6조의 공고기간(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

- 제18조(심사수당 등의 지급)** ① 진흥원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심사에 발주청 또는 감리자, 구매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심사비용의 납부)** ① 신청인은 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의 납부방법, 처리 등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우수 물류신기술등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진흥원장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한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영 제46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자에 대한 영 제46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요청 등을 포함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대상 분류표

분 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 / 안전
기타

[별표 2]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제12조 관련)

종합평가점수	연장기간
80이상~100	5년
70이상~80미만	4년
60이상~70미만	3년
50이상~60미만	2년
40이상~50미만	1년

※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을 불인정

마.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안)

2020. 5. 2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말한다.
2. “규칙”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위원회”란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영 제46조의3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46조의5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영 제46조의4 제2항 및 고시 제7조에 따른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6. “신청서”란 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14조의5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7. “조정위원회”란 고시 제20조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말한다.
8. “민원상대자”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신청서 접수) ①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우수 물류신기술등 신청·접수 공고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신청서를 구비하여 제1항의 공고된 기간 내에 고시 별표1의 분류표에 따른 해당 분야별로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

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시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인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시한 신청분야가 신청기술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공고) 진흥원장은 고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고를 요청 하는 때에는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진흥원장은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의견 제출을 위하여 당해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의견을 반려하거나,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고시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기간 만료후 이해관계 의견이 접수되는 때에는 민원의견으로 접수하여 신청인의 답변을 들어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조회) ① 진흥원장은 고시 제8항제1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7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8호 서식, 구매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9호 서식, 선행물류기술조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를 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물류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고시 별표1의 분류표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 별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 등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기술심사위원회 구성시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중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당해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로 한다.
5.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 ④ 진흥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접수 받아 심사위원 선정시 검토하여 배제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위원 중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 ⑥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신청된 모든 기술에 대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평가하고,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술심사위원회 등)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및 경제성
 2.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술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 ③ 기술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작성한 기술심사 평가서를 현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 기술 및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관정을 받은 결과물로서 신청서를 제출한 기술에 대하여는 고시 제9조제1호의 기술심사기준인 진보성 중 첨단기술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⑤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심사위원회 등) ①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지정신청 기술 또는 연장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8명 내외의 전문가로 현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 및 보급·활용성
 2. 연장신청의 심사기준 : 활용실적 및 품질검증
 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현장심사는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진흥원장은 신청인에게 사전에 현장심사 일자 및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여부 또는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의결한다.
 - ④ 진흥원장은 지정기간 연장의 심사인 경우 고시 별표2에 따라 제2항의 심사위원

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를 종합평가점수로 하여 지정기간의 연장기간을 정한다.

⑤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실사 및 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심사 결과 정리 등) ① 진흥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심사위원회 심사결과(지정신청)’, 별지 제12호 서식 ‘현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지정신청)’ 및 별지 제13호 서식 ‘현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연장신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진흥원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1조(신기술 홍보용 자료 관리) ① 진흥원장은 신기술이 지정(지정기간 연장 포함)된 경우에는 신기술 홍보용 자료(요약자료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홍보용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1인에게 신기술의 보완 현장 내용에 대한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감수가 완료된 신기술에 대해 신기술의 명칭, 범위, 주요내용 및 홍보용 자료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전자문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6과 관련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 또는 보증의 우선 지원을 요청
2.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를 요청
3. 예산 범위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여 지원 등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국내외 홍보 지원

4.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영문인증서 발급 요청 접수 및 국토교통부 보고
5.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우수 물류신기술등이 적용된 제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
6.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우수 물류신기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제공

제13조(비밀유지 및 비공개) ① 진흥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진흥원장은 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심사관련 서류와 위원회 심사위원 선정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기술심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사위원
2. 제15조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
3.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

② 진흥원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홍보용 자료를 감수한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민원조정위원회 등) ①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
2.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3.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4. 기타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③ 진흥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심사했던 심사위원을 우선하여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민원의 특성상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전문가등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진흥원장은 민원인이 민원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민원상대자에게 해당 민원의견을 송부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민원상대자가 민원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답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진흥원장은 민원인의 민원의견 및 민원상대자의 답변서와 해당 신기술의 홍보용 자료 등을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배부하여 민원 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진흥원장은 필요시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 조정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장은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민원인과 민원상대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의 의견 조정과 양보를 통한 합의 도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민원 사항을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⑧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진흥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며, 조정위원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민원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진흥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신기술지정증서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민원상대자에게 기 제출된 홍보용 자료를 수정·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위원 평가) 진흥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성실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필요시 위원회의 참여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부당행위와 관련한 조치 등) ①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 심사 진행중에 부당행위를 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부 칙 (2020. 5.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당행위에 따른 조치내용

부당행위	조치내용
1. 이해관계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한 발언 2. 신청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등 3. 기술에 대한 허위나 과장된 주장 4.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는 등 엄숙하고 엄정한 위원회의 진행이 곤란한 경우	경 고
1.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로비, 회유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장제한 (이해관계인)
1. 위원장으로부터 경고를 2회 받은 경우 2.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퇴 장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서식

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99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서식	99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안)	99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매뉴얼 서식	100



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규칙 별지 제15의2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 [규칙 별지 제15의3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 [규칙 별지 제15의4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규칙 별지 제15의5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 [규칙 별지 제15의6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 [규칙 별지 제15의7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 의견서
-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현장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현장심사 평가서(연장신청)
-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

다.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지침(안)」 별지서식



- [지침 별지 제1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신청 접수증
- [지침 별지 제2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건 공고 서식
- [지침 별지 제3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건 공고 서식
- [지침 별지 제4호] 각서(이해관계인)
- [지침 별지 제5호]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
- [지침 별지 제6호]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 [지침 별지 제7호]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
- [지침 별지 제8호] 발주청/감리자 의견서
- [지침 별지 제9호] 구매기관 의견서
- [지침 별지 제10호] 선행물류기술조사 결과서
- [지침 별지 제11호] 기술심사위원회 심사결과(지정신청)
- [지침 별지 제12호] 현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지정신청)
- [지침 별지 제13호] 현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연장신청)
- [지침 별지 제14호] 신기술 민원검토의견서
- [지침 별지 제15호] 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 결과서
- [지침 별지 제16호] 심사위원 평가표
- [지침 별지 제17호] 서약서

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매뉴얼」 서식



- [매뉴얼 제1호서식] 원가계산서
- [매뉴얼 제2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매뉴얼 제3호서식] 기술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 [매뉴얼 제4호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요약자료
-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자료
- [매뉴얼 제6호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영문지정증서
- [매뉴얼 제7호서식] 개발자 변경 현황
- [매뉴얼 제8호서식] 지식재산권 활용동의서
- [매뉴얼 제9호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현장, 제품)
- [매뉴얼 제10호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현장)
- [매뉴얼 제11호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제품)
- [매뉴얼 제12호서식] 활용실적 서약서(신청인)
- [매뉴얼 제13호서식]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 [매뉴얼 제14호서식] 현장심사계획서(지정)
- [매뉴얼 제15호서식] 현장심사계획서(연장)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물류신기술등의 명칭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우)	(전화:)
물류신기술등의 범위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요약)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물류신기술등의 명칭·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 1부	납부 수수료
	2. 물류신기술등의 내용(물류신기술의 요지 및 신규성·진보성·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적은 서류 1부	1만원 (수입인지 첨부)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 1부		
4. 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 1부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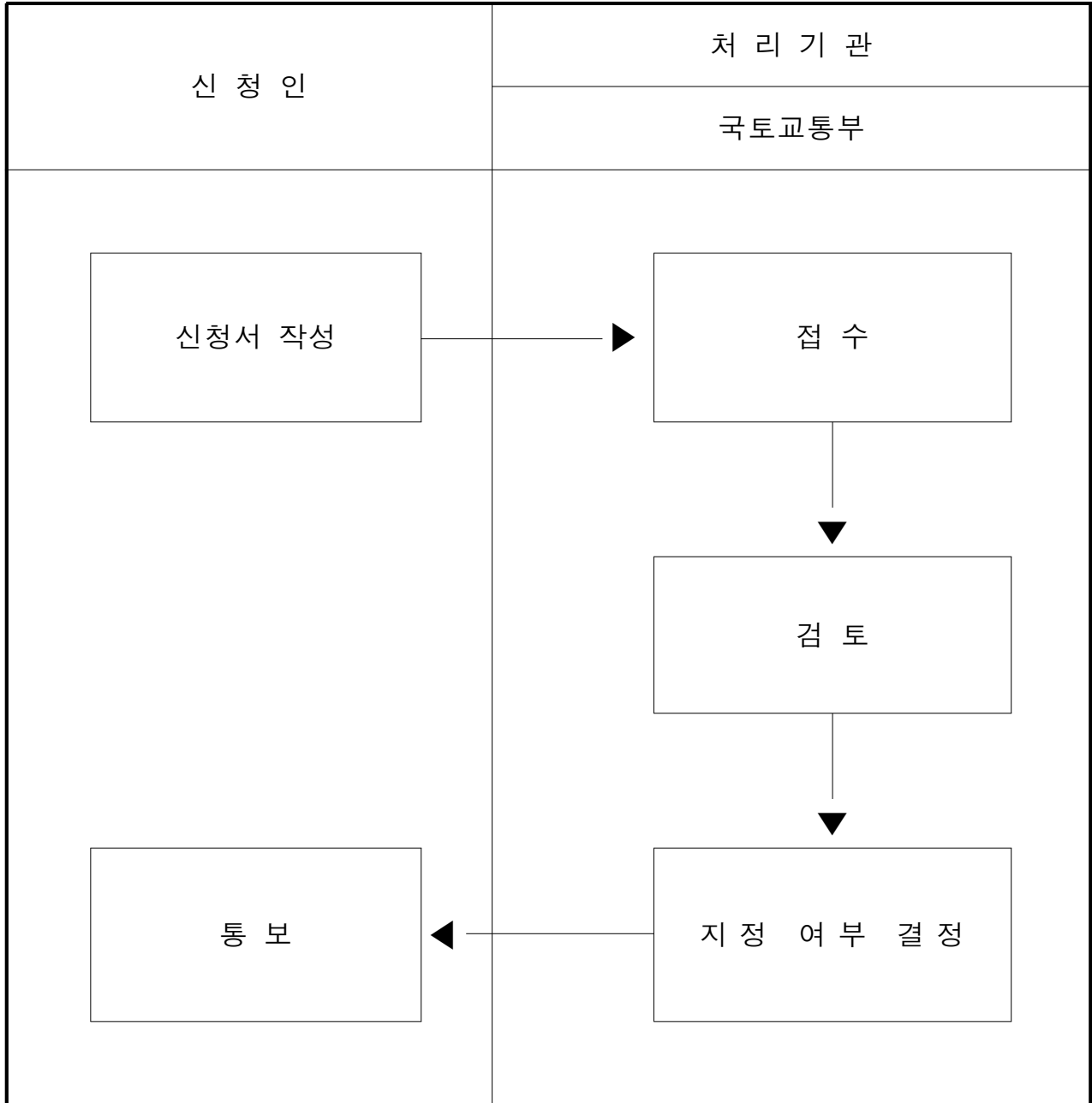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V

관련서식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제 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1. 명 칭:
2. 개발자:
3. 보호기간:
4. 기술범위:
5. 기술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의 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통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V

관련서식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우)		
	(전화:)		
지정번호	지정일		
신청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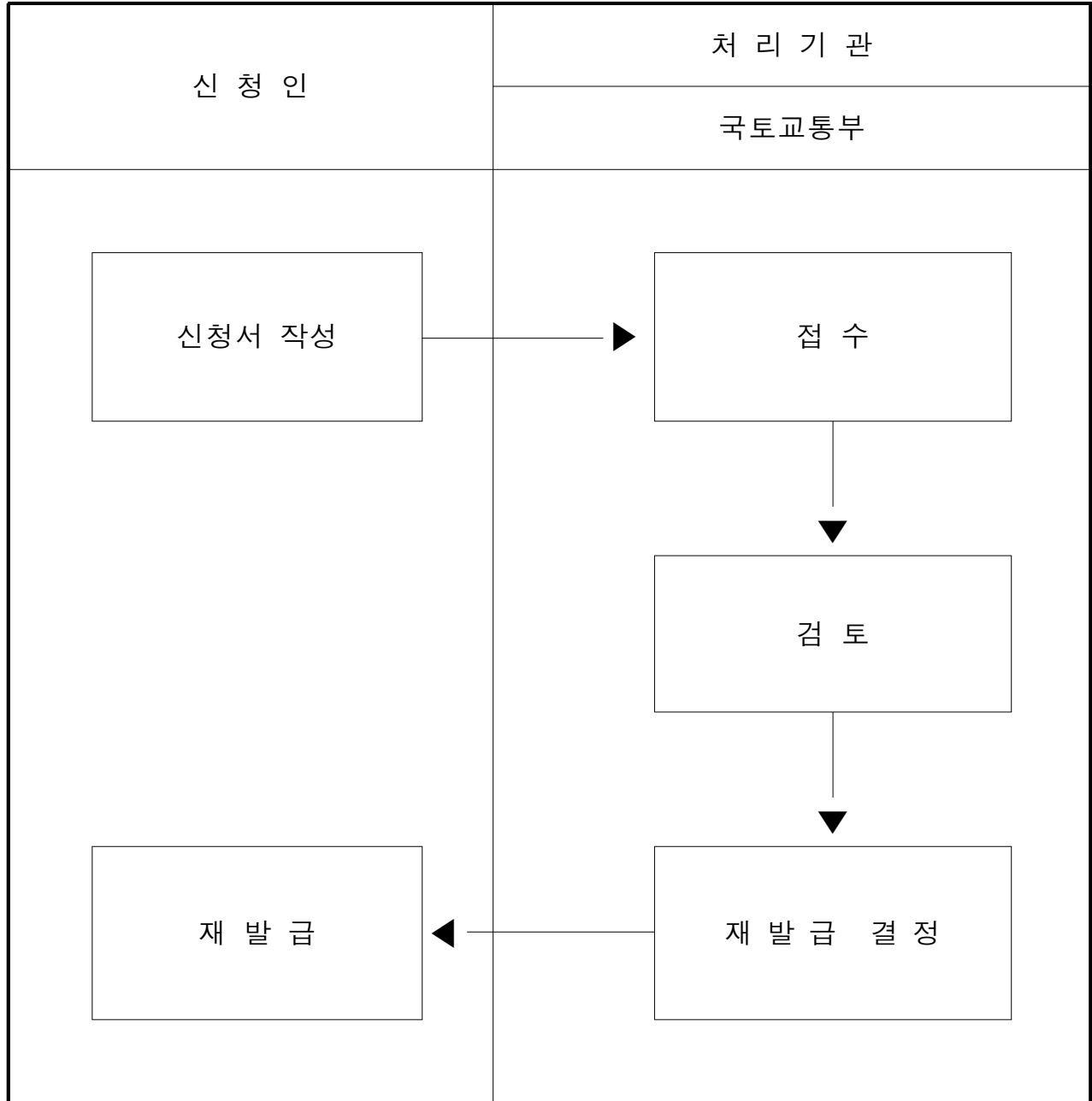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또는 사용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지정번호) : (양쪽)

① 일련 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자명	※④ 업체 분류	※⑤ 발주자 분류	※⑥ 기술 분야	※⑦ 지역	※⑧ 계약 형태	※⑨ 계약 관계	※⑩ 활용 형태	⑪ 계약연 월일	⑫ 착공연 월일	⑬ 준공연 월일	⑭ 시공금액 (기성기준)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붙임 서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물류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 증명서(물류시설공사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2. 세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3.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제1호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만 첨부합니다) 1부 4. 그 밖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작성 방법

1. 현장 활용실적은 물류신기술등별로 작성합니다.
2. 활용금액은 연도별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작성요령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 [백상지(80g/㎡)]

(뒤쪽)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 작성 요령]

※ ④ 업체분류						
※ ⑤ 발주자분류						
※ ⑥ 기술분야	※ ⑦ 지역		※ ⑧ 계약형태		※ ⑨ 계약관계	※ ⑩ 활용형태
1. 운송	1. 서울특별시	10. 충청북도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 도급계약	1. 시공	1. 시공
2. 보관·하역	2. 부산광역시	11. 충청남도	2.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하도급계약	2. 납품	2. 납품
3. 포장	3. 대구광역시	12. 전라북도	3.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직영 공사	3. 설계	3. 설계
4. 물류 정보	4.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4. 수의계약	4. 그 밖의 계약형태	4. 기술사용료	4. 기술사용료
5. 그 밖의 물류기술 등	5. 광주광역시	14. 경상북도	5. 그 밖의 계약형태		5. 그 밖의 활용형태	5. 그 밖의 활용형태
	6. 대전광역시	15. 경상남도				
	7. 울산광역시	16. 제주특별자치도				
	8. 경기도	17. 세종특별자치시				
	9. 강원도	18. 해외				
1. 일반건설업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투자 및 출연기관	4. 교육기관	5. 민간	6. 그 밖의 발주자
2. 전문건설업	1-1. 국토교통부	2-1. 서울	3-1. 한국도로공사	4-1. 서울시교육청	4-11. 충남도교육청	
3. 기술용역	1-2. 해양수산부	2-2. 부산	3-2. 한국토지주택공사	4-2. 부산시교육청	4-12. 전북도교육청	
4. 공공기관	1-3. 지방국토관리청	2-3. 대구	3-3. 한국수자원공사	4-3. 대구시교육청	4-13. 전남도교육청	
5. 연구소	1-4. 지방해양수산청	2-4. 인천	3-4. 한국농어촌공사	4-4. 인천시교육청	4-14. 경북도교육청	
6. 개인	1-5. 국립수산업연구소	2-5. 광주	3-5. 한국전력공사	4-5. 광주시교육청	4-15. 경남도교육청	
7. 그 밖의 업체	1-6. 국방부	2-6. 대전	3-6. 한국철도공사	4-6. 대전시교육청	4-1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1-7. 환경부	2-7. 울산	3-7. 한국철도시설공단	4-7. 울산시교육청	4-1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1-8. 기타 기관	2-8. 경기	3-8. 항만공사	4-8. 경기도교육청	4-18. 그 밖의 교육기관	
		2-9. 강원	3-9. 그 밖의 기관	4-9. 강원도교육청		
		2-10. 충북		4-10. 충북도교육청		

[규칙 별지 제15호의7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또는 사용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지정번호) : (앞쪽)

① 일련 번호	② 구입 기관	※③ 구입기관 분류	※④ 기술 분야	※⑤ 판류 지역	※⑥ 계약 형태	⑦ 판매 수량	⑧ 판매 금액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붙임 서류	1.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1부
	2. 세급계산서 또는 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3. 그 밖에 제품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작성 방법

1. 제품판매 실적은 물류신기술등별,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2. 계약형태는 계약이 있을 경우에 한해 작성합니다.
3.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작성요령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 [(백상지(80g/㎡))]

(뒤쪽)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 작성 요령]

※③ 구입기관 분류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투자 및 출연기관	4. 교육기관		5. 민간
1-1. 국토교통부	2-1.서울 2-11.충남	3-1. 한국도로공사	4-1. 서울시교육청	4-11. 충남도교육청	6. 그 밖의 기관
1-2. 해양수산부	2-2.부산 2-12.전북	3-2. 한국토지주택공사	4-2. 부산시교육청	4-12. 전북도교육청	
1-3. 지방국토관리청	2-3.대구 2-13.전남	3-3. 한국수자원공사	4-3. 대구시교육청	4-13. 전남도교육청	
1-4. 지방해양수산청	2-4.인천 2-14.경북	3-4. 한국농어촌공사	4-4. 인천시교육청	4-14. 경북도교육청	
1-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5.광주 2-15.경남	3-5. 한국전력공사	4-5. 광주시교육청	4-15. 경남도교육청	
1-6. 국방부	2-6.대전 2-16.제주	3-6. 한국철도공사	4-6. 대전시교육청	4-1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1-7. 환경부	2-7.울산 2-17.세종	3-7. 한국철도시설공단	4-7. 울산시교육청	4-1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1-8. 그 밖의 기관	2-8.경기	3-8. 항만공사	4-8. 경기도교육청	4-17. 그 밖의 교육기관	
	2-9.강원	3-9. 그 밖의 기관	4-9. 강원도교육청		
	2-10.충북		4-10. 충북도교육청		
※④ 기술등 분야					
1. 운송		1. 서울특별시	※⑤ 판매지역		※⑥ 계약형태
2. 보관·하역		2. 부산광역시	10. 충청북도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포장		3. 대구광역시	11. 충청남도	2.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 물류 정보		4. 인천광역시	12. 전라북도	3.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5. 그 밖의 물류기술등		5. 광주광역시	13. 전라남도	4. 수의계약	
		6. 대전광역시	14. 경상북도	5. 그 밖의 계약형태	
		7. 울산광역시	15. 경상남도		
		8. 경기도	16. 제주특별자치도		
		9. 강원도	17. 세종특별자치시		
			18. 해외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

(앞쪽)

기술심사 일시	
신청기술 명칭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토의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민원 의견	
민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2. 심사기준 검토

*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기술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의견을 작성

가. 신규성(3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개발·개량 정도	20	
차별성 및 혁신성	10	

나. 진보성(3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성능·품질 향상	10	
시공기간 단축	10	
첨단기술성	10	

* 국가 R&D 결과물 및 녹색인증 기술은 첨단기술성에 10점 부여

(뒤쪽)

다. 안전성(2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기술공학적 안전성	10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	10	

다. 경제성(2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설계·시공비 절감	10	
유지관리비 절감	10	
계	100	<input type="checkbox"/> 인정(7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3. 종합의견

현장심사 상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상정	<input type="checkbox"/> 미상정
------------	-----------------------------	------------------------------

<이유>

4. 현장심사 시 주요 확인사항

* 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 기재

현장적용성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성	
보급·활용성	보급성	
	활용성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현장심사 평가서(지정신청)

(앞쪽)

현장심사 일시	
신청기술 명칭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토의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민원 의견	
민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2. 기술심사 평가서 검토

<의견>

3. 심사기준 검토

가. 현장적용성(7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시공성	30	
안전성	10	
유지관리성	30	

(뒤쪽)

나. 보급·활용성(3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보급성	15		
활용성	15		
계	100	<input type="checkbox"/> 인정(7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의 인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정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	-----------------------------	------------------------------

<의견>

5. 명칭 및 범위의 조정(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에 한함)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	<input type="checkbox"/> 조정	<input type="checkbox"/> 미조정
---------------	-----------------------------	------------------------------

<조정안>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조정	<input type="checkbox"/> 미조정
---------------	-----------------------------	------------------------------

<조정안>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현장심사 평가서(연장신청)

(앞쪽)

현장심사 일시	
신청기술 명칭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토의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민원 의견	
민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2. 심사기준 검토

*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현장실사 결과,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작성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토의견
활용실적 (40)	활용건수 및 금액	30	
	기술보급노력	10	
품질검증 (60)	기술수준	15	
	기술개량	15	
	경제성	10	
	시장성	10	
	안전성	10	
계		100	<input type="checkbox"/> 보호기간 연장 인정(4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뒤쪽)

3. 신청기술의 범위 조정

범위조정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	-----------------------------	------------------------------

※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안 및 사유 기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 신청 접수증			
접수일자		신청분야	
관리번호			
신청기술명			
신청인			
안 내			
<p>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지정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제46조의5)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p> <p>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3에서 정한 심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은행 : ▶ 계좌번호 : ▶ 납부금액 : 1,000,000원 <p>심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귀사(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소 및 담당자를 명시하여 기술인증센터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Fax. 031-381-4994)</p> <p>※ 수수료 납부자가 신청인과 상이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는 입금 확인후 등기로 보내드립니다.</p> <p>심사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p>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기술심사 ⇒ 현장심사(품질검사) ⇒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p> </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접수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명)</p> <p>※ 문의전화 : 031)389-6483 (계산서 발급 문의 031-389-6311)</p>			

V
관련서식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건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번호 000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나. 전화번호 :

2. 명칭 :

3. 내용요약

<분야>

<기술의 요지>

<범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건이 복수일 경우 관리번호 순으로 작성**

※ 신청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

※ 이해관계의견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에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우편 소인 날자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 가능) 으로 제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건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5제1항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 호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관리번호 000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나. 전화번호 :

2. 지정번호 :

3. 명칭 :

4. 내용요약

<분야>

<기술의 요지>

<범위>

5. 지정기간 :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건이 복수일 경우 관리번호 순으로 작성**

※ 신청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

※ 이해관계의견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에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우편 소인 날자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 가능) 으로 제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이해관계인)

본인은 가(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기술[신청기술명(신기술명):]에 대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 신기술지정 신청서(또는 신기술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정히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의 동의 없이 동 신청서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 의견 제출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주 소(소재지) :
- 생 년 월 일 :
- 성 명(법인명) : (서명)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수령자가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 첨부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신청기술	명 칭	(관리번호 :)
	범 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의 견 (요약)		
답변		
주)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 토 교 통 과 학 기 술 진 흥 원 장 귀 하		
구비서류 : 이해관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 자료		

V
관련서식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지정 신청)

신 청 인	
신청 기술명	

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평가기준 검토

가.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 개량되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기술로,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이 인정되고, 품질 및 성능 등이 향상되었으며, 자체기술 투입정도가 높은 기술인지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다. 안전성 :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라. 경제성 :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마.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인정되는 기술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바. 보급·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2. 신청서류의 검토

가. 공인기관 시험결과의 적절성 및 보완 필요 여부 <의견>
나. 시방서, 사양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운영 및 사용설명서 등의 내용, 방법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견>
다. 기타 신청서류 내용의 적정성 <의견>

3. 종합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기관명		소속부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연장 신청)

신 청 인	
신청 기술명	

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평가기준 검토

가. 활용실적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범위에 부합되는 활용실적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나. 기술보급 노력 : 신기술 지정 후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노력 및 실적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다. 기술수준 및 개량 : 국내외 동종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수준이 높은지와 신기술 지정 후 후속개발에 따른 개선·개량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라. 경제성 : 동종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마. 시장성 : 동종 유사기술 대비 경쟁우위, 시장 확대가능성이 있는 기술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바. 안전성 :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유해요소 및 이에 대한 대책이 갖추어져 있는지와 동종분야 기존 유사기술에 비해 안전성의 개선 내용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견>

2. 연장신청서류 검토

가. 공인기관 시험결과의 적절성 및 보완 필요 여부
<의견>
나. 시방서, 사양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운영 및 사용설명서 등의 내용, 방법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견>
다. 기타 신청서류 내용의 적정성
<의견>

3. 종합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기관명		소속부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마. 예상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기간 비교 <의견>	(2/2)
바. 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 등 우수성 여부 <의견>	
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 여부 <의견>	
아. 유지관리상의 편리성 여부 <의견>	
자. 하자발생 및 보수 사례 유무 <의견>	

2. 종합의견

기관명		소속부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구매기관 의견서

신 청 인	
신청 기술명	

구 매 개 요	기관명		구매일	
	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 <input type="checkbox"/> 일반경쟁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타 계약 관련 사항			
	품목 수		해당 품목 총 구매금액	
	구매 단가			

1. 신청기술 적용결과 검토의견

가. 국내외 동종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 우위 여부 <의견>
나. 사용상 문제점의 존재 여부 <의견>
다. 사용상의 안전성 유무 <의견>
라. 사용 시 비용절감 효과 유무 <의견>

마. 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 등 우수성 여부 <의견>
바. 품질관리상의 편리성 여부 <의견>
사. 하자발생 및 수리 교환 등 조치 사례 유무 <의견>

2. 종합의견

기관명		소속부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선행물류기술조사 결과서

접수번호	
------	--

년 월 일

신청인											
신청기술명											
기술요지											
조사범위	국제분류 (IPC)										
	특허문헌	한국	(O)	미국	(O)	일본	(O)	EP	(O)	PCT	(O)
	비특허문헌	신기술									
		논문등									

조사결과 총괄표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전 특허문헌

연번	인용문헌	
	문헌번호	기술내용[()쪽 ()행] 및 도면
1		
2		
3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후 특허문헌

연번	인용문헌	
	문헌번호	명 칭
1		
2		
3		

■ 신기술, 논문 등의 비특허문헌

연번	인용문헌	
	문헌번호	명 칭
1		
2		

관련기술 대비표(상세분석)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전 특허문헌		
연번	신청기술의 기술내용 및 도면	인용문헌의 기술내용 및 도면
1		
2		
3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후 특허문헌		
연번	신청기술의 기술내용 및 도면	인용문헌의 기술내용 및 도면
1		
2		
3		

■ 신기술, 논문 등 비특허문헌		
연번	신청기술의 기술내용 및 도면	인용문헌의 기술내용 및 도면
1		
2		
3		

조사기관 의견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과 신청기술 범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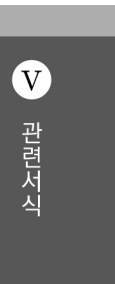
■ 신청인이 언급하지 않은 신청인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심사위원회 심사결과(지정신청)

(관리번호:)

심사일시		심사장소	
신청기술명			
신청인 (주소)			
이해관계인 (주소)			
<input type="checkbox"/> 신청기술의 개요 ○			
<input type="checkbox"/> 심사 의결사항 ○ 의결결과 : 현장심사위원회 상정 '인정/불인정'(찬성 00/00, 반대 00/00) ○ 심사항목별 주요 의견 등 -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인, 신청인 주장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사 관련 결정사항 ○ 실시여부 : 현장실사 "실시/미실시"(찬성 00/00, 반대 00/00) ○ 실사시기 : ○ 실사장소 : ○ 신청서상의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에 아래 사항을 수정·보완			



[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현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지정신청)

(관리번호:)

심사일시		심사장소	
신청기술명			
신청인 (주소)			
<p><input type="checkbox"/> 신기술지정 인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결과 : 신기술지정 ‘인정/불인정’ (찬성 00/00, 반대 00/00) ○ 심사항목별 주요 의견 - - <p><input type="checkbox"/> 신기술지정 명칭·범위 등 조정 여부(신기술지정 ‘인정’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의 명칭 (<input type="checkbox"/> 조정, <input type="checkbox"/> 미조정) - 조정 전 : - 조정 후 : ○ 신기술의 범위(<input type="checkbox"/> 조정, <input type="checkbox"/> 미조정) - 조정 전 : - 조정 후 : ○ 신기술의 내용(<input type="checkbox"/> 조정, <input type="checkbox"/> 미조정) - 조정 전 : - 조정 후 :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현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연장신청)

(관리번호:)

심사일시		심사장소	
신청기술명			
신청인 (주소)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의결 내용 ○ 의결결과 : 신기술 지정기간 “00년 연장”(종합평가점수 : 점) ○ 신기술 분야 : ○ 신기술 범위 :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신기술 민원검토의견서

위원회일시 :

기술명 :

민원 의견 검토

※ 해당 민원의견에 대하여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기술

필요시 별도 의견 제출

추가조사 여부

추가조사 여부

필요

불필요

※ 민원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여부

조정 여부

필요

불필요

※ 검토결과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신기술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였으며,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성명 :

(서명)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 결과서

위원회일시		위원회장소	
신기술명			
민원인(주소)			
민원상대자 (주소)			
<input type="checkbox"/> 종합의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민원에 대한 조정내용 <input type="radio"/> 추가조사여부 : 추가조사 '필요/불필요' <input type="radio"/> 조정여부 : 조정 '필요/불필요' <input type="radio"/> 조정사항 : <input type="radio"/> 사 유 :			
첨부(내부결재용에 한함) 1.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자 명단 1부. 2. 위원회 위원의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첨부 1>

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자 명단

1. 위원회 개요

위원회일시		위원회장소	
기술명			
민원인(주소)			
민원상대자(주소)	-		

2. 위원 및 관계자

구 분	소속	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서 기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심사위원 평가표

□ 관리번호: □ 심사일자: □ 기술평: □ 담당자:

항목	평가기준	배점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위원8	위원9	위원10	위원11	위원12
성 실 성	우수	사전질의, 의견서를 사전에 입력하고 심사 참여도가 우수	3											
	보통	사전질의, 의견서 일부만 사전에 입력하고 심사 참여도가 보통	0											
	미흡	사전질의, 의견서를 사전에 입력하지 않고 심사 참여도가 미흡	-3											
전 문 성	우수	기술내용에 부합되게 질의하고 의견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4											
	보통	기술내용에 부합되게 질의하고 의견서가 구체적이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작성	0											
	미흡	기술내용에 부합되지 않게 질의하고 의견서를 성의 없이 작성	-4											
공 정 성	우수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게 질의나 의견을 제시	3											
	미흡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우호적이거나 심사에 매우 부적절한 질의나 의견 제시	-3											
	미흡	비윤리적인 행위 발견	-20											
계														
등급														
※ 등급 구분 : A등급(7이상), B등급(0~6), C등급(-5~-1), D등급(-6이하), E등급(불참)														

[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서 약 서

□ 위원회명 :

□ 신청기술명 :

□ 개최일시 :

(신청인) 본인은 상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건(지정기간 연장신청 포함)을 신청함에 있어 심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 신청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이나 진흥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한 로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신청서 반려, 지정취소 및 신기술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해관계인) 본인은 상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건(지정기간 연장신청 포함)에 대해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기 신청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이나 진흥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한 로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어떠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기술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등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도 승복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신기술심사위원회 입장제한, 경고, 퇴장 및 신기술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심사위원) 본인은 상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건(지정기간 연장신청 포함)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신청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기술 심사에 임하고, 심사 중 인지한 사실과 신청 기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 등도 철저히 거부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사실과 다르거나 서약내용을 어길 경우 어떠한 민·형사 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이해관계 기준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 확인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신청인(법인명) :	(인)
이해관계인(법인명) :	(인)
심사위원 :	(인)

[매뉴얼 제1호서식]

원 가 계 산 서

(측면)

(전면)

원
가
계
산
서

크
기
16

2
0
0
0
·
0
(크
기
10)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용
(좌측상단, 상부여백4cm, 크기12)

원 가 계 산 서

(크기30)

(명칭: ○ ○ ○ ○ ○ ○)

(크기18)

(신청인: ○ ○ ○ ○ ○ ○)

(우측여백3cm, 크기13)

2000. 0 (신청년도, 월, 크기15)

(조사기관 : ○ ○ ○)

(크기20, 하부여백 5cm)

* 겉표지색 : 흰색

[매뉴얼 제2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신청기술 명칭 :

□ 심사 일시 :

□ 참석자 명단 :

성 명	소 속 (부서명, 직위)	기술개발참여내역	휴대 폰번호	비고
				발표자

※ 작성시 유의사항

1. 참석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이어야 함.
2. 참석자는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신청인 본인, 법인일 경우 법인 소속 5인 이내의 직원이 참석(신청인이 복수 법인일 경우에는 5인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3. 기술개발 참여내역란에는 기술개발 기여 내역, 기술개발 역할 등을 요약기술(30자 내외)
4. 참석자 신분증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제출서류
 - 법인 소속 참석자 개개인의 재직증명서
 - 청렴서약서(신청기관 도장으로 각 1부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매뉴얼 제3호서식]

기술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 신청기술 명칭 :

□ 신청인 :

□ 심사 일시 :

□ 참석자 명단 :

성 명	소 속 (부서명, 직위)	이해관계 내역	전화번호(HP)	비고
				발표자

※ 작성시 유의사항

1. 참석자는 이해관계인의견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함
2. 참석자는 이해관계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 법인일 경우 법인 소속 3인 이내의 직원이 참석(이해관계인이 복수 법인일 경우에는 3인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3. 이해관계 내역란에는 해당 이해관계 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술
4. 참석자 신분증
5. 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제출서류
 - 법인 소속 참석자 개개인의 재직증명서
 - 청렴서약서(이해관계인 도장으로 각 1부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매뉴얼 제4호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요약자료

※ 우수 물류신기술등 요약자료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상의 명칭
(글자크기 16, 휴면명조 진하게)

- 우수 물류신기술등개발자 : (주)○○○ (글자크기 11, 휴면명조 진하게)
- 주 소 : ○○도 ○○시 ○○구 ○○동 (Tel. ○○○-○○○-○○○○)
- 보호 기간 : 20○○. ○○. ○○ ~ 20○○. ○○. ○○(5년)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 (글자크기 12, 휴면명조 진하게)

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범위 및 내용 (글자크기 11, 휴면명조 진하게)

- (1) 범위 (글자크기 11, 휴면명조)
- (2) 내용
 - * 지정증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 (1) 원리
- (2) 시공·제작 방법
 - * 신청기술에 대한 기본설계도(상세도면 및 개념도 등) 제시

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나. 경제적 파급효과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자료

(측면)

(전면)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제000호 신 기 술 명 칭 (크기 14) 2 0 0 0 · 0 (크기 10) □ 물 류 신 기 술 개 발 자 □ (크기 12)	우수 물류신기술등지정 제00호(크기11, 진하게)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padding: 2px;">지정 분야</td> <td style="width: 100px; height: 20px;"></td> </tr> </table> <p>(좌측상단, 상부여백4cm)</p> <h1 style="text-align: center;">신 기 술 명 칭</h1> <p style="text-align: center;">(크기30, 진하게)</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2000. 0 (지정년도, 월, 크기15)</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기술개발자:○○○)</p> <p style="text-align: center;">(크기20, 하부여백 5cm)</p>	지정 분야
지정 분야		

※ 겉표지색 : 하늘색

(후면)

안 내

본 우수 물류신기술등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 ○ ○ ○ ○ ○

○도 ○시 ○구 ○동 ○번지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책자열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Tel. 031-389-6483

Fax. 031-381-4994

[매뉴얼 제6호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영문지정증서

No.000

New Excellent logistics Technology Certification

- Title :
- Developer :
- Period of Protection : 0 years (Mar 00, 2000~Mar 00, 2000)
- Scope Of Technology
『
』
- Description of Technology
『
』
- Contents to be Protected

In compliance with provision of Article 57 (1) of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 and Article 4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I hereby designate above technology as New Excellent logistics Technology

March 00, 202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매뉴얼 제8호서식]

	발급 번호	T0000-0000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현장,제품)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건(제0호, 제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판매/활용 건수	판매/활용 금액(천원)	
제0호	0000	0000-00-00	0000-00-00	0	000	
이하어백						
합계				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판매/활용 건수	판매/활용 금액(천원)
자발적 활용실적	해당없음					
소계					0건	00
국가통합물류체계 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매뉴얼 제9호서식]

발급 번호	T0000-0000
----------	------------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현장)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건(제0호, 제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 (천원)	
제0호	0000	0000-00-00	0000-00-00	0	000	
이하여백						
합계				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 (천원)
자발적 활용실적	해당없음					
소계				0건	00	
국가통합물류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매뉴얼 제10호서식]

	발급 번호	T0000-0000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제품)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건(제0호, 제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판매건수	판매금액 (천원)	
제0호	0000	0000-00-00	0000-00-00	0	000	
이하여백						
합계				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판매건수	판매금액 (천원)
자발적 활용실적	해당없음					
소계					0건	00
국가통합물류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매뉴얼 제12호서식]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① 신기술명칭	※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② 신기술 지정분야	※ 예 : 물류수단 - 철도차량 - 선로구조물(매뉴얼 5페이지 참조)						
③ 핵심어	※ 신청기술과 관련된 핵심어를 5가지 이내로 기재						
④ 신기술의 범위	※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⑤ 신기술의 내용 (요약)	※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⑥ 신청인 정보							
신청인 ①	기관명칭	※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명 기재					
	기관유형	※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중 선택					
	법인번호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기관주소	※ 법인등기부 등본 내 주소 기재(단 도로명 주소로 변환 기재)					
	우편번호	※ 우편번호 5자리 기재					
신청인 ②	기관명칭						
	기관유형						
	법인번호						
	기관주소						
	우편번호						
신청인 ③	기관명칭						
	기관유형						
	법인번호						
	기관주소						
	우편번호						
⑦ 실무담당자 정보							
구분	이름	소속기관명	회사 연락처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직위
실무담당자 1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2							
실무담당자 3							

※ 신청인이 복수일 경우 각 신청기관별 실무담당자 1명씩 기재(칸 추가 가능)

※ 기술인증센터 담당자와 연락할 **총괄책임자를 정하여 기재**

※ 한글(HWP)로 작성하고, 접수시 모든 파일은 CD로 제출

[매뉴얼 제13호서식]

현장심사 계획서(지정)

[기술명]

20〇〇. 〇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V

관련서식

|| 목 차 ||

1. 신청기술의 개요
2. 현장 개요
3. 현장심사 주요 확인사항
4. 세부 일정
5. 심사장소 약도

1. 신청기술의 개요

신청기술명 :

기술개발자 :

신청기술의 시공(생산)절차 중 현장점검 가능 여부

① 공정1:	② 공정2:	③ 공정3: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④ 공정4:	⑤ 공정5:	⑥ 공정6: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2. 현장 개요

심사현장 현황(적용현장)

<u>심사현장 현황자료</u>		우선순위	1	
신청기술 현장개요	공사명			
	현장 분류	<input type="checkbox"/> 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input type="checkbox"/> 적용현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주자 / 시공사			
	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입찰 <input type="checkbox"/> 공개경쟁입찰 <input type="checkbox"/> 기타		
	전체공사금액 (신청기술공사금액)			
	시공 규모			
	현장위치 (주소)			
	공사 기간 (신청기술공사기간)	(~) 총 일	<input type="checkbox"/> 시공중 <input type="checkbox"/> 준공	
	투입인원및 장비	<인원> • 기술공 : 인 • 보통인부 : 인	<장비>	
현장설명	현장특징	※ 우선순위 선정사유, 현장조건이나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		
	안전 사고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현장심사 가능시기			

□ 심사현장 현황(제품생산)

<u>심사현장 현황자료</u>			우선순위	1
신청기술 현장개요	현장명		○ 현장사진	
	현장 분류	○ 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 적용현장 ○ 기타		
	구매자			
	계약형태	○ 수의계약 ○ 제한경쟁입찰 ○ 공개경쟁입찰 ○ 기타		
	총 판매금액 (신청기술판매금액)			
	현장위치 (주소)			
	비고	* 위의 사항 외에 현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기술		
현장설명	현장특징	* 우선순위 선정사유, 현장조건이나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		
	안전 사고	○ 유 ○ 무		
	현장심사 가능시기			

3. 현장심사 주요 확인사항

1. 주요 확인사항

가. 공통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기준	점검방법	점검결과		점검의견
				적합	부적합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생산 상태, 활성화 여부	예) 적용자재 확인	신청기술 재료 납품증명서 입고확인서 등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	:	:	:	:
설계도, 운영 및 사용설명서, 시방서, 유지관리지 침서 등의 적정성						
	:	:	:	:	:	:

나. 심사기준별 확인사항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기준	점검방법	점검결과		점검의견
				적합	부적합	
시공성	작성 예) -관로기능에 따른 적용 -관종류에 따른 적용	-송수, 도수 배수관 -주철관 강관 PCC관	참조			
안전성	-플랜지부 안전 여부 -원관과의 밀착 여부 -굴착 개소 -시민불편사항 -이음부 안정성 -구조안정성에 대한 내구성 확보 -신장률	-PE 플랜지 성형상태 확인 -CCTV 및 육안검사 -비산먼지 -물류소통 -용착상태 확인 -내구 관련 사항 -시험의 종류 및 기준	-성적서 확인 -기준서 -먼지 농도기준 -설문조사 참조 -시공 확인 -신청서, 시험성적서 참조 -시험결과 참조			

유지 관리성	-하자 여부 -교체비	-재료의 내구성 -기시행청의 여론조사 -교체비용 비교 검토	-내구 기준 -여론조사서 -유지보수비용 산출표			
보급성						
활용성						

다. 기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점검결과		심사의견
			적합	부적합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	:	:	:	:

4. 세부 일정 - 예시

○ 현장심사 일자 : 0000년 00월 00일(0요일)

시 간	내 용	비 고
00:00	■ 00터미널(역) 앞	■ 1차 모이는 장소 (※대중물류 이용 및 자가차량 이용 위원님 모두 집결)
00:00~00:00	■ 00터미널(역) ⇨ 회의실 이동	■ 신청인의 안내
00:00~00:00	■ 현장심사 설명 및 신청기술 발표 ■ 질의응답	■ 회의실
00:00~00:00	■ 현장으로 이동	■ 현장이동거리(000M)
00:00~00:00	■ 현장점검	■ 현장심사 평가서 항목별 점검항목 확인
00:00~00:00	■ 현장으로 이동	■ 현장이동거리(000M)
00:00~00:00	■ 현장점검	■ 현장심사 평가서 항목별 점검항목 확인
00:00~00:00	■ 현장심사 평가서 작성	■ 회의실
00:00~00:00	■ 현장심사 종료 ■ 00터미널(역) 이동	

○ 대중교통 안내

- 00:00 00터미널(역) 출발 ⇨ 00:00 00버스터미널(역) 도착

5. 심사장소 약도

현장점검 장소	000 생산현장
모이는 일시	0000. 00. 00. 00시 00분
주소 및 연락처	00도 00시 000 (간사 : 010 - 0000 - 0000)
약도	

[매뉴얼 제14호서식]

현장심사 계획서(연장)

[기술명]

2000. 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목 차 ||

1. 신기술의 개요
2. 현장 개요
3. 현장심사 주요 확인사항
4. 세부 일정
5. 심사장소 약도

1. 신기술의 개요

신기술명 :

기술개발자 :

신기술의 시공(생산)절차 중 현장점검 가능 여부

① 공정1:	② 공정2:	③ 공정3: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④ 공정4:	⑤ 공정5:	⑥ 공정6: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현장점검 가능 / 불가능

2. 현장 개요

심사현장 현황(적용현장)

<u>심사현장 현황자료</u>			우선순위	1	
신청 기술 현장 개요	공사명		○ 현장사진		
	현장 분류	○ 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 적용현장 ○ 기타			
	발주자 / 시공사				
	계약형태	○ 수의계약 ○ 제한경쟁입찰 ○ 공개경쟁입찰 ○ 기타			
	전체공사금액 (신청기술공사금액)				
	시공 규모				
	현장위치 (주소)				
	공사 기간 (신청기술공사기간)	(~)	총 일	○ 시공중 ○ 준공	
	투입인원및 장비	<인원> • 기술공 : 인 • 보통인부 : 인	<장비>		
현장 설명	현장특징	※ 우선순위 선정사유, 현장조건이나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			
	안전 사고	○ 유 ○ 무			
	현장심사 가능시기				

□ 심사현장 현황(제품생산)

<u>심사현장 현황자료</u>			우선순위	1
신청 기술 현장 개요	현장명		○ 현장사진	
	현장 분류	○ 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 적용현장 ○ 기타		
	구매자			
	계약형태	○ 수의계약 ○ 제한경쟁입찰 ○ 공개경쟁입찰 ○ 기타		
	총 판매금액 (신청기술판매금액)			
	현장위치 (주소)			
	비고	* 위의 사항 외에 현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기술		
현장 설명	현장특징	* 우선순위 선정사유, 현장조건이나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		
	안전 사고	○ 유 ○ 무		
	현장심사 가능시기			

3. 현장심사 주요 확인사항

1. 주요 확인사항

가. 공통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기준	점검 방법	점검결과		점검의견
				적합	부적합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생산 상태, 활성화 여부	예) 적용자재 확인	신청기술 재료 납품증명서 입고확인서 등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	:	:	:	:
설계도, 운영 및 사용설명서, 시방서, 유지관리지 침서 등의 적정성						
	:	:	:	:	:	:

나. 심사기준별 확인사항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기준	점검 방법	점검결과		점검의견
				적합	부적합	
기술수준	예) 국내외 동종기술 비교 현황	-적용 기준 및 법규 -공정기간 -현장 운용상태	-00참조 -공정표 -사진			
기술개량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다. 기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점검결과		심사의견
			적합	부적합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	:	:	:	:

4. 세부 일정 - 예시

○ 현장심사 일자 : 0000년 00월 00일(0요일)

시 간	내 용	비 고
00:00	■ 00터미널(역) 앞	■ 1차 모이는 장소 (※대중물류 이용 및 자가차량 이용 위원님 모두 집결)
00:00~00:00	■ 00터미널(역) ⇨ 회의실 이동	■ 신청인의 안내
00:00~00:00	■ 현장심사 설명 및 신청기술 발표 ■ 질의응답	■ 회의실
00:00~00:00	■ 현장으로 이동	■ 현장이동거리(000M)
00:00~00:00	■ 현장점검	■ 현장심사 평가서 항목별 점검항목 확인
00:00~00:00	■ 현장으로 이동	■ 현장이동거리(000M)
00:00~00:00	■ 현장점검	■ 현장심사 평가서 항목별 점검항목 확인
00:00~00:00	■ 현장심사 평가서 작성	■ 회의실
00:00~00:00	■ 현장심사 종료 ■ 00터미널(역) 이동	

○ 대중교통 안내

- 00:00 00터미널(역) 출발 ⇨ 00:00 00버스터미널(역) 도착

5. 실사장소 약도

현장점검 장소	000 생산현장
모이는 일시	0000. 00. 00. 00시 00분
주소 및 연락처	00도 00시 000 (간사 : 010 - 0000 - 0000)
약도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
담당부서 안내**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 담당부서 안내]

주요 역할	담당기관	전화번호 (팩스)
우수 물류신기술등 업무 총괄 -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 업무 제도개선 신기술 지정·고시 및 증서 발급 등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044-201-4012 (044-201-5601)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 및 제도 운영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의 접수·반려 및 심사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의견 조희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유지·관리 - 우수 물류신기술등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반려 및 심사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475(제도), 031-389-6483(심사) (031-381-4994)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기술인증센터
(Tel. 031-389-6483)

- 주소 :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번지) 송백빌딩 4층(하나은행 건물 4층)



교통편	오시는 길
전철	☞ 전철4호선 평촌역 2번 출구(70m, 하나은행과 동일 건물 내)
공항버스	☞ 김포공항(청사 7번 승강장) ⇒ 범계역 ⇒ 전철이용 평촌역 하차 ☞ 경기공항 리무진 버스(김포↔범계, 약 1시간 소요)
자가용	☞ 서울 외곽순환도로(서울) ⇒ 평촌IC ⇒ 농수산물시장에서 우회전 ⇒ 한림대병원 ⇒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우회전 ⇒ 이마트 전방 하나은행 ☞ 서울 외곽순환도로(인천) ⇒ 평촌IC ⇒ 농수산물시장 삼거리에서 좌회전 ⇒ 한림대병원 ⇒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우회전 ⇒ 이마트 전방 하나은행

우수 물류신기술등 매뉴얼
